

시민법감시



우리의 주장
특집 I

특집 II

특집 III

기획 I

기획 II

활동소개

차기 정권에 바란다
법원

검찰

인권보호를 위한 제언

SOFA를 개정하라

유전자 정보은행은 필요악인가

논평, 성명, 의견서

사법감시시

통권 제17호 | 2003년 1-2월호

우리의 주장 차기정권에 바란다 / 조국(서울대 법학과 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 6

특집 I 법원

사법부 민주화를 위한 제언 / 정지석(변호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8

파업권은 오로지 헌법 속에 잠자는 권리인가 / 권두섭(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법규차장) 10

특집 II 검찰

검찰, 검찰총장이 바로서야 한다 / 하태훈(고려대 법학과 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14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의 필요성과 그 내용 / 전제일(사법감시센터 간사) 16

이것만은 고치자 - 벌금예납제도의 위헌성에 대하여 / 이찬희(변호사, 두라 합동법률사무소) 20

특집 III 인권 보호를 위한 제언

변호인참여권과 검찰수사의 민주화 / 장유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변호사) 24

기자가 본 서울지검 / 안창현(한겨레신문 기자) 30

법 **SOFA를 개정하라**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 이정희(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34
환경분야에서의 SOFA개정 방향 / 여영학(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40
효순이 미선이 / 오영숙 수녀님	44

법 **유전자정보은행은 필요악인가**

유전자정보은행의 필요성 / 이승환(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실장)	48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여부, 신중히 결정돼야 / 김병수(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54

차기정권에 바란다

조국(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 센터 소장)

우리 역사상 최초의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차기 대통령은 장기간 독학으로 공부하여 고시에 합격하여 판사생활을 하였고, 이후 "잘 나가는" 변호사 생활과 인권변호사 생활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가 법조계의 내부의 문제를 익히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먼저 최근 '인수위원회'는 검찰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상설 특별검사제의 한시적 제도화, 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검찰총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중립화를 위한 조직구조 및 원리의 개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로의 격상,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등은 참여연대가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다. 과거에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상의 요구에 대하여 법무부와 검찰이 반대를 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차기정권이 검찰개혁을 어떻게 이루는가는 차기정권의 개혁의지와 전망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정권과 검찰의 유착이 정권과 검찰 모두에게 치명적 독이 되었음을 상기하면서 검찰개혁에 임해주길 바란다. 검찰을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검찰개혁에 착수할 때 검찰도 살고, 나라도 살 것이다.

한편 차기정권은 검찰개혁만이 아니라 사법 전체에 대한 개혁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사법개혁이라는 화두가 던져진 후 정부 산하에는 각종 위원회가 조직되어 많은 논의를 하였으나 이루어진 것은 미미하였다. 수많은 제안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률가의 이익에 반하는 개혁안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 '법조삼륜'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족귀족'이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이며,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혁신해야 한다는 점에 분명히 인식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현재의 사법구조는 여전히 참여가능성이 봉쇄되어 있는 폐쇄구조이며, 대중으로부터의 감시와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성역이다. 배심제도, 참심제도, 명예법관제도, 법정 조언자제도 등의 제안이나 지검단위의 민간인이

참여하는 검찰중립감시기구 설치 등의 제안이 왜 나오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또한 국민적 비판을 받은 "전관예우"의 관행 등 법조비리의 근절도 중대한 과제이다. 법조비리는 법조내의 공정한 경쟁을 막을 뿐만 아니라 정의의 실현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중대한 불법이다. 각종 수임비리사건이 터졌지만 현재의 '변호사윤리강령'은 너무도 추상적이고 허술하며 징계의 강도도 미약하다. 변호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가 변호사개업을 하는데 제약을 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차기정권은 법률시장 개방을 목전에 둔 시점에 현재의 법률가 양성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 수의 증가 때문에 변호사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소리가 종종 들리지만, 이는 사법시험합격을 위한 수년간의 노력을 했으니 얼마만큼의 수입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념의 소산이다. 변호사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변호사와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사고는 독점재벌의 논리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소송 외의 "예방적 법률서비스" 분야는 여전히 변호사 공백상태이며, 다수의 일반 국민은 적정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높은 수입료와 불성실변론에 소송의뢰인의 진정은 근래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개방적 경쟁을 회피하고 폐쇄적 시장구조 아래 독점적 지위를 고집할 경우 법률시장개방에 대한 대비는 무망한 일이다.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나라와 외국은 법체계와 문화가 다르다는 반론이 항상

제기된다. 영미의 예를 들면 법계가 다르다고 외면되기 십상이니, 우리가 가장 사법구조가 비슷한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일본의 경우 '사법제도 개혁심의회'가 발족된 이후 수 년 간의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정력적 논의를 거친 후 우리 법조의 시각으로 혁명적으로 보일 만한 사법개혁안을 제출하였다. 변호사 수의 대폭증가, 로스쿨 설립, 변호사와 인접법률관련직종(paralegals)과 관계 재정립, 법조일원화, 배심제 실시 등이 확정되어 실시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사실 이상의 점은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학계에서도 이미 많은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다. 현 시기는 또 다른 논의의 반복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논의를 모아 내고 사법개혁을 구체적 일정 하에 현실화시켜야 할 시기이다. "정치개혁"과 "재벌개혁"과 마찬가지로 "사법개혁"은 21세기 한국 사회의 생존과 진보를 위한 기초작업이다. 이를 위해 모든 법률관련 전문가집단은 자신의 직역(職域)의 이익을 떨치기 위해 의식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차기 정권도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 민주화를 위한 제언

정지석(변호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1. 문제의 제기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및 심의의 결기구화 등 검찰개혁 조치들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그간 법조계 내외부에서 끊임 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법부 개혁의 쟁점들을 점검한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등에서 여러 차례 사법개혁안이 제시되었고 또 일부 개혁안은 제도개선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대법원의 바램과는 달리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법원을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 위의 사법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간의 사법개혁 논의가 국민참여, 국민감시라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절차에 대한 비전을 결여한 채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정부 들어서도 곧 연례행사처럼 사법개혁 논의가 되풀이되겠지만, 사법부의 진정한 개혁을 바란다면 사법부 구성 및 운영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러한 전망을 결여한 사법개혁 논의는 또다시 미봉책에 그치고 말 것이다.

2 몇 가지 제언

가. 법관 임용절차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구성의 민주화, 즉 법관 임용과정에 국민참여, 국민감시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법관이 진정으로 독립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진정으로 보장되는 길이 될 것이다.

현행 법관 임용은 법관임용심사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회의 등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대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지만, 실상은 대부분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대법원장의 의사대로 결정되고 있다. 특히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는 민주화운동 전력자의 임용거부는 그 대표적 예이다.

장기적으로는 법관선거제가 바람직하지만, 우선 법관인사위원회의 다수를 법관 이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의결기관화하고, 법관은 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명부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 법관 재임용절차

법관 재임용 제도는 본래의 존재의의와 달리 몇몇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는 대법원의 방침에 반대하는 법관들을 엄격히 파면

절차를 회피하고 사실상 파면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법관 재임용제도는 재판의 독립을 저해하는 제도로써 폐지되어야 하지만, 헌법 사항인 관계상 우선 파면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그 재임용 여부에 대한 결정도 위와 같이 구성되는 법관인사위원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인사평정 및 승진제도

그간 대법원의 인사관행은 공정성의 확보에 지나치게 치중된 점이 있는데, 인사평정 제도의 핵심은 객관성 및 투명성의 확보에 있을 것이다. 지난해 현행 법관 인사평정 및 승진제도가 위헌이라는 헌직 부장판사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응하여 대법원에서는 법관 인사평정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법원장이 당해 법원의 법관을 평정하는 현행 하향식 평정제도의 골격이 변화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인사평정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새정부 들어서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라. 법관인사위원회

현재의 법관인사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거의 전원이 헌직 고위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권한도 법관 임용이나 인사이동에서의 자문에 그치고 있는 등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어 있다. 법관인사위원회의 다수를 법관 이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의결기관화하고, 나아가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두어 법관 임용, 재임용, 인사이동 등 법관 인사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대법관 추천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의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각

급 인사위원회를 두어 해당 법원의 법관 임용에 관하여 의결기구로서 기능하게 하고, 임명권자는 법관임용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 법관선거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법관이나 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 등에 대해서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제나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은 대법원장, 대법관 및 각급 법원장만이라도 위와 같은 선거제를 통해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1960년의 제2공화국 헌법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제를 예정하고 있었던 바가 있다.

바. 법조일원화의 문제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판사 및 검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현행의 경력법관 제도와는 양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갑작스럽게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므로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법관인사위원회에 의한 법관임용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실시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맺음말

사법부 개혁의 문제는 사법부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지금까지의 논의가 사법부 또는 법조계 내부에서 한정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사법개혁 논의는 더 이상 국민과 동떨어진 사법부 또는 법조계 내부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사법부의 민주화를 위한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그 논의과정에서부터 민주화되어야, 즉 국민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파업권은 오로지 헌법 속에 잠자는 권리인가

권두섭(변호사, 민주노총 법규차장)

지난해 2월 26일 대법원은 98년 조폐공사노조의 파업에 대하여 애초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업무방해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또 '단체협약에 구조 조정시 노동조합과 합의한다는 조항 역시... 협의의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결국 파업을 하면 불법이 되고 실사 단체협약에 합의 조항을 두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협의 정도의 의미만 가진다고 함으로써 정리해고, 민영화 등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미 앞서 대법원은(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도4779판결) "쟁의행위의 목적에 관하여 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실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회사에 대하여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주된 주장으로 내세우며 벌인 파업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관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을 깨고 불법파업이라며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조폐창의 통폐합이나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는 해고,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외 불리한 변경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정리해고 문제 역시 실업자인 노동자는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임금을 받을 수 없고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에 비하여 실업자인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열악하다 할 것이고, 해고회피방법,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과 대상자 선정 문제는 근로조건외

결정에 관한 문제임이 명백하다. 설사 경영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사항이 되고 법원의 주장대로 노조의 완전 철회 주장이 과대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간에 조정될 문제이지 그것을 가지고 쟁의행위 목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협소한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비추어도 '중대한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요즘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법 제정, 경제자유구역법 철폐,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법과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정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쟁점이 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주장을 내걸고 파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와 같은 산업적 정치파업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여기에 대하여도 '사용자의 처분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불법으로 단죄한다.

그러나 국가는 경제정책, 법과 제도를 통해 노사관계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개발독재의 성공모델이라고 자평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권력이 경제정책,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다른 국가들보다도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노동자들의 삶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을 보아도, 현실적으로 근로조건이 사용자의 관계

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오히려 주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모두 국가의 정책이나 법제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고보면 국가를 상대로 한 산업적 정치파업은 노동자들이 가지는 노동 3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제정책과 이의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들이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여 서로 이익이 상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정치파업으로 인하여 일부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것만은 아니며, 더구나 경제정책이나 법제도로 인하여 사용자들이 얻는 이익은 매우 지속적인 데다가 산술적으로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익을 얻는 만큼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사용자들도 어느 정도 위험(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민법상의 기본원리에 비추어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회와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항의하는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ILO 전문가위원회도 정부가 채택한 정책이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및 직업적 이해관계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단결체는 원칙적으로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정책 경향에 의해서 야기된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업행위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IL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81st Session, Report III, 1994, para. 165)"고 하여 산업적 정치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저간의 사정을 보면 사용자들은 전경련, 경총 등의 각종 이익단체와 그들이 정치권력에 대해 음성적으로 제공하여 온 막대한 정치자금과 각계에 뻗어 있는 인맥을 활용하여 정치권과 보수언론을 통해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정치권력에 종속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를 보여주던 것에서 대등하고 쌍방적인 관계로 가고 있을 정도로 그 권력이 막강하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은 그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이나 법제도 설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IMF 이후 이루어진 신자유주의 정책의 시행과 이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IMF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재벌, 정치권, 경제관료, 언론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오로지 노동자들만이 정리하고, 비정규직화 등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며 생존권을 위협받기에 이르고 빈부격차는 더욱 더 심화된 것을 보라.

경제위기를 불러온 경제정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설정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책 방향이나 법제도의 설정에 있어서 완전한 공공선은 존재할 수 없다. 선해하여 '공공선'의 범위내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일방의 이익에 편향된 정책이나 법제도의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보라. 발전산업노조의 공기업 사유화, 국가기간산업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파업은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엄연한 불법이다. 그런데 흘러나오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공기업 민영화 정책 제고, 기간산업의 재벌과 해외매각 신중 검토라고 한다. 정부와 기업의 경제정책은 언제나 공공선으로 노동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혼계를 내려 왔던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법원은 왜 자신의 언론도 정치세력도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침묵과 순응만을 강요하는가.

법원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법리적 엄밀성이나 형평성을 외면하고 어느 일방의 편만을 들어줌으로써 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법원이 우리 사회에서 중립적이라거나 공정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의 법률과 법원의 해석태도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파업을 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고자 마음먹은 사람이 노조간부가 되면 그는 감옥에 갈 각오를 다져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노동현실이다.

언론은 또 어떤가 파업권을 헌법에 보장된 1300만 노동자의 기본권이 아니라 사회악으로 묘사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정부는 파업을 범죄시하지 말고 노조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권고에도 묵묵부답일 뿐이다. 새해벽두부터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연행과 구속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의 불법 파업을 문제삼아 법원에서 결정한 가압류를 비판하여 한 노동자가 분신하였다. 파업이 불법이 되면 업무방해

죄, 손해배상과 가압류, 해고 및 징계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들이다.

그가 남긴 유서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인정하

지 않고 노조무력화에 골몰하는 재벌자본과 그들의 편에 서 있는 법원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 해고가 되어 쫓겨난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배어 있다.

한 노동자의 유서

출근을 해도 재미가 없다. 해고자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두산이 해도 너무 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말살 악랄한 정책으로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 사원의 고용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두산이 사택매각 식당 하도급화 노동조합과 합의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구나. 얼마 전 징계자들이 출근정지가 끝나고 현장에 복귀하였지만 무슨 재미로 생산에 열심히 하겠는가. 이제 이틀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

두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인간들이 아닌가.

나는 매일같이 고민을 해본다. 두산의 노동조합 말살정책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얼마전 구속자 선고재판 어처구니없이 실행 2년이라니 두산은 사법부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 공정해야 할 재판부가 절차를 거쳐 정의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불법이라니.....

가진 자의 법이 아닌가.

더러운 세상 악랄한 두산, 내가 먼저 평온한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것이다. 동지들이여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해주기 바란다.

불쌍한 해고자들 꼭 복직 바란다.

나는 항상 우리 민주광장에서 지켜볼 것이다.

내가 없더라도 우리 가족 보살펴주기 바란다.

미안합니다.

검찰, 검찰총장이 바로서야 한다

하태훈(고려대 법학과 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검찰개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언론에 등장하는 단어다. 그만큼 검찰의 국민적 신뢰회복과 정치적 중립확보가 새 정부의 주요과제 중 하나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면 될수록 이번에도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조바심이 앞선다. 그동안 수 차례의 기회가 정치권의 무관심과 검찰의 소극적 자세로 인하여 무산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기대통령은 달라야 한다. 이번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개혁의 첫발을 내딛지 못하면 국민적 지지로부터 멀어질 것이며 임기 내내 거대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검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은 필수적이다.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유지를 위하여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 준사법기관이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 의무를 갖는다. 검찰은 권력을 감시하고 부패를 통제하는 기관이다.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기본권과 소송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법치국가이념의 대변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런 지위와 성격을 갖는 검찰은 조직상

으로는 위계적·관료적 조직으로부터 민주적·자율적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 인사의 개방화와 공정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검찰이 바로서야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고 법질서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 검찰이 바로서는 길은 바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상명하복관계의 정점인 검찰총장이 집권자나 집권여당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소신을 가지고 법과 양심에 따라 검찰권 행사를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이념이 임명절차부터 임기기간뿐만 아니라 퇴임 후까지 지켜져야 한다. 우선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임명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검찰총장 임기제(검찰청법 제12조 제3항)가 검찰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하리라는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검찰총장 임기 후 공직취임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위헌결정(헌재 1997.7.16, 97헌마26)이 내려진 바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부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소신 있고 능력 있는 민주적 인사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공정한 인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검사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금지(검찰청법 제44조의2)와 함께 검찰총장의 퇴직 후 2년 간 공직취임금지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신설된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검찰총장은 퇴직일부 2년 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과 제5항(검찰총장은 퇴직일부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검사의 비서실파견금지조항도 편법운용으로 말미암아 유명무실한 장치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은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상실한 채 선언적 의미만 남게 되었다.

공직취임금지조항의 취지는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재임 중 다른 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은 검찰이 정치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퇴임 후에 바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거나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을 거쳐 국회의원이 된 사례가 적지 않아 임기 중에 보다 나은 공직이나 집권 정당의 유혹을 배제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대두되어 신설된 것이었다. 물론 검찰총장 퇴임 후 2년 이내에 모든 공직에의 임명을 금지한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포괄적 제한이어서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제한의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새 대통령은 공직취임금지조항의 효력은 상실되었지만 그 제도적 배경과 취지를 참작하여 검찰총장 퇴임 후 공직임명을 자제하여야 한다. 모든 공직이 아니라 특정의 제한된 공직(예컨대 법무부장관이나 국정원장)의 취임을 일정기간(예컨대 2년)만 금지시킨다면 정치적 중립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기본권제한이므로 위헌논란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임기보장은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동안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검찰총장은 거의 없다. 이제부터라도 임기 중에는 소신에 따라 검찰권 행사를 지휘하도록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무부·검찰이 대립하고 있다. 개혁과제의 실현에는 기존 조직의 반발도 반발이거니와 법개정을 위한 입법적 다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도 장애요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법개정이 필요 없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바로 검찰총장의 임기보장과 퇴임 후 공직임명금지는 법개정이 필요 없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하다. 새 대통령은 이를 천명하여 검찰총장이 임기 내에 임명권자나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법과 소신에 따라 검찰권 행사를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필요성과 그 내용

전제일(사법감시센터 간사)

1. 설치의 필요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본입장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하고 한시적으로 상설 특검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위의 사항은 노 당선자의 대신 공약임은 물론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여전히 검찰조직 외부에 별도로 공소권을 갖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조사처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 보면,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수 십 년 간 사정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과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중립성이 생명인 사정기관이 정치에 휘둘렸던 사례가 빈번했으며, 공소권을 독점함으로써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아, 결국 국민에 의해 개혁의 대상으로 낙인찍히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 국민은 권력형 부패 등에 대해 단호히 척결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한다. 그것이 다름 아닌, 검찰외부에서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을 다시 볼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대한 설치의 필요성으로 표출된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올바른 작동하지 않은 기존의 국가 사정체계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을 분리하여 견제조직을 설치함으로

써 상호간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의미를 갖는다. 권력형 부패에 대한 검찰의 무능과 눈치보기 행태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2. 조사처의 핵심적 내용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한시적 특검제와 비교해 보면, 상설기구인지 여부, 인지수사권 보유 여부, 수사 관할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지만 두 제도 모두 고위직 및 부패 정치인 등의 권력형비리 척결을 위한 가시적 조치라는 점에서는 같다. 따라서 동시에 추진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약간의 검토와 보완을 통해 특검제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로 흡수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조사처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소속을 법무부 내지 대검찰청 소속이 아닌 대통령 내지 독립기구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경우 그 기능과 업무는 철저히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기존 검사의 파견뿐 아니라 인적교류도 철저히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사처는 국가사정기관으로서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전혀 맥을 못 추던 기존 검찰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검찰로 하여금 사정체계를 복원하게 하여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사정체계의 완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 관한 특례법(안) 소개

아래의 특례법안은 참여연대가 2002년 7월에 국회에 제출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특례법" 입법청원안이다. 완전한 내용이 아니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의 대강과 골자를 담고 있다. 앞으로 각계의 검토와 수정, 보완을 거쳐야 할 미완성의 안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나 참고할 만하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안)

▶ 제안이유

종립적이고 독립적인 사정기구의 존재는 깨끗한 정치,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정기관들은 부패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부패사건을 보면, 한 개인이나 기관의 차원을 넘어서서 청와대를 비롯하여 검찰, 국정원, 감사원, 금감원 등 모든 부패통제기관들이 연루되어 있다.

특히,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제도적·현실적 한계로 인해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부패사건에 연루되어 비리의 공범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으나, 이는 검찰내부조직이라는 명백한 한계로 인해 완전한 독립권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검찰수뇌부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가지고 권력과 정치권으로

부터 자유로운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는 권력형비리를 예방하고 척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자 상호견제가 가능한 선의의 경쟁구조를 만듦으로써 검찰이 정치권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검찰개혁방안의 일환이기도 하다.

상설적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고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과 차장을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독립된 특별검사과 특별수사관을 두어 대통령과 친인척, 고위공직자, 검찰내부인사 등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사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주요골자

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일종의 상설 특별검사제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대통령을 위시하여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각부의 장/차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가정보원 원장 및 차장,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경찰청장과 차장, 지방경찰청장, 법관 및 검사, 군장성 등이며 이에 해당하는 자의 범죄와 감사원 등이 고발하는 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로 한정함으로써 검찰과 권한조정을 피함(안 제2조)

다. 이를 위해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등을 두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사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처장, 특별검사와 필요직원(특별수사관 등)으로 구성하되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5년이고, 자격은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과 10년이상을 각각의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음. 또한 처장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차장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안 제4조)

마. 특별검사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대법원장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안 제5조)

바. 특별검사는 오직 처장의 지휘만을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안 제5조)

사. 특별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검사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수사, 공소의 제기,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행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함(안 제6조)

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금융기관 계좌추적권을 부여(안 제7조)

자. 이 법에 중복되는 다른기관의 업무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로 이관토록 해 관할권을 분명히 하고 다만 처장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총장 등에게 이첩토록 함(안 제9조)

차. 부당한 압력과 영향력의 행사를 금지토록 하고 처장 등은 금고이상의 형이나 국회의 해임요구 없이 파면되지 않도록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을 보장 함(안 제10조)

카. 매년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12조)

타. 예산에 있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독립기관으로 취급(안 13조)

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죄 이외에도 제66조 내지 제83조의 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권을 갖도록 함(안 제14조)

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별법(안)

제 1조 (설치)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한다.

제 2조 (직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특정공직자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와 이에 필요한 사항

가. 대통령, 국무총리

나. 정부조직법 제29조에 따른 행정 각부의 장관 및 차관

다. 정부조직법이 정하고 있는 각 처와 청의 청장,

라. 감사원의 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및 국장

마.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차장 및 국장

바. 경찰청의 청장, 차장, 및 각 시도경찰청장

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 법관, 검사

자. 국회의원

차. 군장성급

카. 대통령선거를 위해 조직된 전국적 선거운동 위원회의 주요간부

타. 전 각목의 직위에 있었던 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파. 기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

수사를 요청한 자 및 이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

2. 감사원등에서 고발하는 등록재산의 허위자료제출의 죄 등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와 이에 필요한 사항

제 3조 (조직)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및 기타 필요한 국원을 둔다.

제 4조 (부장과 차장)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 차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2.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차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처장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처원을 지휘 통솔한다.

5. 처장은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6. 차장은 부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부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5조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

1.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특별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 임명하여야 한다.

3. 특별검사는 검찰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처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4. 특별수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본다.

제 6조 (특별검사의 권한)

1. 특별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에 정한 검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2. 특별검사의 수사, 공소의 제기, 공소의 유지,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행사는 형사소송법 상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 7조 (금융기관의 계좌추적권) 부패행위의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해당계좌를 열람, 추적할 수 있다.

제 8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구권)

1. 처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전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9조 (관할)

1. 이 법에 따라 중복되는 다른기관의 업무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로 이관되며 오로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만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2. 다만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제 10조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누구로부터도 부당한 압력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의 해임요구가 있기 전에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 11조 (탄핵)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탄핵될 수 있다.

제 12조 (국회에의 보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매년 정기

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조 (예산회계)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취급한다.

2. 기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4조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정한 죄이외에도 이 법 제66조 내지 제83조의 죄에 대하여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4. 마치며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조사처가 신설되면 수사대상(관할)에 있어서 혼선이 초래될 수 있으며 따라서 수사의 난맥상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수사의 난맥상이 초래된 이유는 검찰이 권력형비리나 정치인수사에 있어서 제대로된 사정의 칼을 대지 못한데서 초래된 측면이 다분하다. 수사대상이라는 저열적인 문제로 조사처의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

주목되는 것은, 최근 대검찰청 내부에서도 일부 이긴 하지만-정치인수사 및 검찰이 수사를 하기 힘든 사안은 차라리 검찰이 손을 떼어도 무방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검찰의 권한을 어떤 이유로든 타 기관에 이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부의 의견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고 보이며, 진정으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존경을 받는 길이라고 보는 것이다. 누차 강조한 바 있듯이 스스로 변할 때 보다 개혁의 객체가 되었을 때 결과가 더욱 가혹하다. 검찰도 이제 변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벌금예납제도의 위헌성에 대하여

이찬희(변호사, 두라 합동법률사무소)

1. 글을 시작하며

우리 형법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인 형벌로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등 9종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 41조). 이 중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형벌인 벌금형은 형사정책적으로 자유형(특히 단기자유형)의 집행이 수형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없앨 뿐만 아니라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재산의 박탈은 효과적인 형벌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의 재력에 따라 형벌로서의 효과가 달라지게 되고 벌금형의 집행이 직접 피고인의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형벌의 일신전속적 성질을 침해하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범죄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벌금형의 효과적 집행이 문제된다.

벌금형의 집행은 자유형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의 책임하에 집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벌금형의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징수사무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한편 국가세수 증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형벌권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벌금의 효과적인 징수가 요청

되는바,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재 검찰에서는 기소전 벌금예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소전 벌금예납제도에 대하여는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바(실제로 참여연대에서도 위 제도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법소원청구를 하여 현재 심판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벌금예납제도의 실정법적 근거

벌금예납제도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검찰이 피의자로부터 미리 벌금을 받는 제도를 말하는데, 실무상으로는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는 단계에서 피의자로부터 벌금을 예납받고 있다.

현재 벌금예납제도는 법무부령인 검찰징수사무규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동규칙 제34조 제 1항은 "검사는 형집행의 효율화와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을 구할 피의자에게 그 벌금·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납할 것을 고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벌금예납제도의 이론적 근거

벌금징수사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검찰을 포함하여(그러나 검찰조직이 아닌 검사 개개인들이 이 제도를 지지하는지는 의문이다) 벌금예납제도의 찬성론자들은 대체로 벌금예납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가. 효과적인 형벌의 집행

벌금예납제도의 가장 큰 존재이유로는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형벌의 집행을 들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중에 벌금을 예납하라면 피의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하여 납부하지만,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경제적인 사정상 일부러 또는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차일피일 그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과적인 벌금의 징수를 위하여 벌금을 예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벌금미납자를 방치한다면 이는 벌금미납자가 정직한 납부자보다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되어 사법불신을 가져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법집행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어 국가형벌권의 체계가 위협받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제도

벌금예납제도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한편 벌금예납제도가 피의자 측에서 보아도 유리한 제도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즉, 피의자가 벌금을 예납하면 검사가 구약식을 할 것이고 이런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것이므로 결국 피의자는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인신이 구속되는 자유형을 피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피의자가 벌금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구공판을 할 수 있어 이 경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몇 차례(최소한 제1회 공판 기일과 선고기일을 합하여 2회 이상) 출석하여야 하므로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는 검찰이 구약식기소한 후 몇 달이 지난 뒤 법원이 벌금을 선고하여 검찰이 벌금형을 집행할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사가 잦은 우리 현실에서 이사 등으로 인해 주소가 바뀔 때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지명수배자가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게 된다는 점도 들고 있다.

다. 징수인력과 예산낭비의 초래

한편 벌금예납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벌금형이 확정된 후 납입받아야 하는데, 위에서 든 여러 가지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국식의 형집행관제도가 없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격무에 시달리는 검찰직원이 미납자들을 일일이 찾으러 다녀야 하는 징수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인력과 예산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벌금징수사무를 위해 무작정 미국식의 형집행관제도를 신설하자고만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

라. 예납선택의 자유

벌금예납제도는 강제예납제도가 아니라 피의자에게 예납에 대하여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이는 자율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결코 기본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

마. 벌금예납제도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벌금예납제도는 국가형벌권의 확실하고도 효과적인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일견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고 볼 수도 있

으나, 이러한 실효성의 추구는 이 제도가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합헌적인 제도임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벌금예납제도가 과연 현행 헌법에 합치하는 제도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강력하게 제기되는바,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재판청구권의 침해

벌금예납제도의 실제 운용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수사와 공소제기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 이미 주눅이 든 상태에서 검사가 고지하는 벌금액에 대하여 실형을 면했다는 황공한 마음에 신중하고려없이 벌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벌금을 납부한 후에는 자신에 대한 형사절차가 모두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여 더 이상 자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정식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의자가 과연 법률적으로 유죄인지 여부, 유죄라 할지라도 피의자에 대하여 고지된 벌금액이 그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적절한 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판단이므로 현실적으로는 법원에 가서도 그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분명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에 형이 집행된다는 점에서 형사사법의 기본구조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무죄추정원칙에 위반

우리 헌법은 제27조 제4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

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기소단계에서 벌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유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3.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입법권자가 제정하는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간주되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기본권제한의 방법으로 법률의 형식을 요구하는 것을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이라고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이러한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다면 기본권을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법률유보는 그 자체가 일종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현행 벌금예납제도는 그 근거가 「법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무부령」인 검찰징수사무규칙에만 근거가 있으므로 이는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4. 재산권의 침해

벌금예납제도는 또한 확정판결 전에 국민으로부터 벌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 벌금액이 다액인 경우는 물론 비록 소액일지라도 국민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없이 자신의 재산권을 국가에 의해 징수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는 무죄의 경우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유죄의 경우에도 확정 전에 벌금을 예납하는 것은 예납후 판결확정전까지 의무없는 이자상당

의 금원을 국가가 부당이득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역시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거나 벌금액이 감액되어 선고를 받는 경우 당연히 예납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환급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환급해 주는데, 피고인이 무죄 또는 구형량보다 감액된 판결에 만족한 나머지 예납한 벌금을 찾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도 재산권침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5.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

비록 검찰징수사무규칙은 제37조에서 강제예납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검찰에서는 예납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의자들에게 사실상 예납을 강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에서 사용하는 벌과금예납고지서를 보면 '수신'란의 오른쪽에 굵은 글씨로 "납부기일엄수"라고 되어 있고, "벌금미납부서 불이익에 관한 안내"라는 제목하에 "①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고 그 재판과정에서 벌금액수가 높아지거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확정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전국에 지명수배되며 경찰의 불신검문에 의하여 현장체포되어 재판없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해외여행을 할 수 없고, 귀하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고지서의 취지를 보면 벌금을 예납기일내에 내지 않으면, 정식재판회부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벌금의 예납여부가 약식기소나 정식재판회부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분명한 것으로 위와 같이 위협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여 벌금예납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제10조)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V. 글을 마치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검찰이 시행하고 있는 기소전 벌금예납제도는 현실적인 형벌집행력의 확보라는 무시할 수 없는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이는 헌법상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제10조) 등에 위반하는 위헌적인 제도로써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검찰에서도 벌금예납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위헌성을 내포한 벌금예납제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논의의 출발점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제도인 벌금예납제도는 폐지하되,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집행력확보라는 충돌하는 이상을 조화시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의 분납을 인정하는 벌금분납제도 등 벌금형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변호인참여권과 검찰수사의 민주화

장유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변호사)

1. 시작하며

2002년 12월 22일, 법무부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현직검사의 구속을 가져왔던 서울지검의 피의자폭행치사사건(10월말)에 대해 법무부가 내놓은 '인권보호수사준칙'¹⁾에 이은 조치였다.

법무부는 당초 이 개정안이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실제 발표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수사 편의적 발상에 치우쳐 있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은 물론이고 대법원과 대한변협에서조차도 법무부의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 외에는 아무도 이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지 않다.

법무부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권'의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폭행치사사건을 계기로 변호인 참여권의 제도적 시행이 강력하게 요구되었고,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여론상 어쩔 수 없이 참여권을

인정하되 그 권한을 가능한 축소하고, 동시에 수사력 보장을 위해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사범방해죄 신설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기간의 연장 등을 제시하게 된 것이었다.²⁾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의 보장은 그동안 학계 및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내용이다.³⁾ 더구나 경찰은 1999년 6월부터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⁴⁾ 이처럼 경찰에서조차 시행하고 있는 변호인 참여권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애써 외면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가늠하게 해주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어쩌면 해묵은 논의인 '변호인의 참여권' 문제에 대해 그 내용을 살펴보고, 법무부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지적한 후, 검찰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를 간단히 부연하기로 한다.

¹⁾ 이 준칙은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시 증거능력 배제, 압수수색방법 제한, 참고인에 대한 이메일조사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이론, 실무상 당연한 내용을 반복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²⁾ 개정안은 보석 확대 및 석방제도 개선, 재정신청 대상 확대, 국선변호인제도를 모든 구속 피고인에게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³⁾ 학계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8조 제5항을 근거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다는 견해도 있다(신동운).

⁴⁾ 물론 경찰에서 마련한 지침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피의자의 권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제한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찰의 이런 태도는 [검찰수사권독립논쟁]에서 임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⁵⁾

1) 필요성

현행법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밀실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진술거부권의 제약 등 불법수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고,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번복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재판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며 사실상 그 내용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생긴다⁶⁾ 이와 같은 현실은 검사가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충분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검사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입회하여 이의를 제기했

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참여권의 범위

가. 검사의 피의자신문

검찰수사 중 변호인 입회권을 허용하는 경우, 실체진실의 발견과 효율적인 수사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이다.

법무부개정안은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되, 체포·구속 후 48시간 이내에는 변호인의 입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수사상 가장 필요하다는 구속 후 48시간은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시간대이고 가장 절실히 변호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라며 "따라서 변호인의 신문시 입회권은 아무런 시간적 제약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⁷⁾

나.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경찰조서는 피의자가 공판절차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2항)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대하여는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더 높을 뿐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 및 피의자신문절차의 공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 참여권을 부인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⁵⁾ 이하의 내용은 2001년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제출한 [검찰개혁의견서]에서 주요내용을 발췌하였다.

⁶⁾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은 세계적으로도 입법례가 희박한 규정으로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지나치게 강한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어 위헌성 논란이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93헌바45)은 이 규정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법관에 의한 재판청구권과 적법절차에 관한 헌법상의 원리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⁷⁾ 한편, 법조계 일부에서는 변호인 참여권의 확대가 피의자 인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간이 곧 돈인 변호사들이 1명의 피의자만을 위해 하루종일 시간을 할애한다면 수임료 역시 크게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법률서비스시장의 전면적 개편(예컨대 모든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제도)가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신문기일의 사전통지, 연기 등

변호인이 신문장소와 시간을 사전에 알아야만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신문기일을 변호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게 되고, 사실상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신문기일을 통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가 원하는데도 검사가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공판절차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처럼 시급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통지를 하게 되면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수사기관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변호인이 신문기일의 연기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하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사전에 피의자와 접견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부당한 지연이 없는 범위에서 신문기일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4 참여권의 한계

법무부 개정안은 [변호인이 입회하더라도,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을 하거나 신문을 제지 또는 중단시키는 등 변호인이 신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같은 법무부의 입장은 변호인의 참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의자의 보호자로서 수사기

관의 수사권남용을 통제하고 불법한 수사활동에 의하여 피의자가 자백을 하는 기회를 차단하는 범위에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진술에 대한 조언은 하지 않고 입회만 하되 수사기관의 불법한 수사활동이나, 조서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법무부 개정안의 독소조항들

법무부개정안은 변호인참여권을 시간적(48시간), 방법적(일체의 개입금지)으로 제한하는 한편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수사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왔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참고인 강제구인제, 사법방해죄 신설, 구속기간 연장이 그것이다.

소위 '거악의 비리나 조직범죄, 강력범죄'에 맞서 싸우는 수사기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지금과 같은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현재의 고민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 심지어는 검찰이 피의자폭행치사사건을 계기로 반성은 커녕 그동안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 한다는 비아냥소리마저 들린다.

1) 참고인 강제구인제

법무부 개정안은 [범죄수사에 중요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24시간 이내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참고인 구인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의 편의 때문에 국민 모두의 '신체의 자유'를 검찰에 저당잡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그 정황을 알 만하다는 이유만으로 선량한 시민을 강제로 끌어다 조사를 할 수 있다면 또다른 인권침해 시비를 부를 게 뻔하다.

사실 악의적인 참고인들이 검찰에 강제구인권이 없다

는 것을 이용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검찰에서 소환해도 이를 우습게 아는 참고인들 때문에 수사기관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강제구인제의 도입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것이다.⁸⁾ 법무부와 검찰이 이미 의지를 밝힌 대로 '선증거수집 후 소환조사'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 나가고 불필요한 참고인 소환을 억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자백편중수사에서 과학수사로 전환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이다.

2) 사법방해죄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 수사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사법방해죄의 신설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회유·협박에 따라 진술한 내용을 공판에서 반복할 경우 오히려 허위진술죄로 처벌받게 돼 공판절차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사법방해죄 신설에 명백히 반대했다.

사법방해죄란 것도 수사편의를 위한 발상이다. 참고인의 진술이 허위인지 아닌지는 다양한 증거확보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검찰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거짓을 말하더라도 증거와 과학수사 기법에 의해 실제적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수사이다. 다만, 참고인이 법관면전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때 그를 위증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벌권행사일 것이다.

3) 구속기간의 연장

[특정 강력범죄와 마약범죄, 테러범죄, 뇌물사건에 대한 검찰 구속기간을 현행 20일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앞서 민변도 "특정사건에 관해 구속수사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구속기간의 연장에는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피의자를 구속하기 전에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다면, 그것이 조직범죄든 아니든, 구속기간을 연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법무부는 구속연장 대상을 조직폭력, 마약, 테러, 살인, 수뢰 등 중대범죄로 국한했지만 '무죄추정'이라는 대원칙에 비춰볼 때 6개월씩 구속할 수 있는 조항은 '지나친 수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수사관행을 자백 위주에서 제3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수집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장기수사가 불가피한 일부 범죄에 한해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무조건 6개월을 구금상태에 두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1개월씩 통제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줬고 구속적부심을 통해 피의자는 언제든지 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무부측 설명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수사의 어려움을 들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이른바 중대범죄에 대한 해법은 수사인력의 확충과 과학화 및 사전준비의 철저성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것이지, 무작정 인신구속기간을 늘리려는 것은 지극히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형사 사법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인신구속을 최소화하는 방향인 바 기존의 구속기간도 지나치게 길어서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마당에 오히려 구속기간을 늘리자는 법무부와 검찰의 이번 개정안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⁸⁾ 핵심참고인을 조사하지 못해 미제에 빠진 참고인 중지사건이 전체 형사사건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2001년 현재 참고인의 불출석 및 소재불명 등 이유로 수사가 중단돼 미제로 남아 있는 사건은 전체 형사사건 184만4636건의 0.86%에 불과한 1만5911건이었다.

4 검찰의 수사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

최근 변호인참여권이 핵심주제로 대두되었지만, 여기에 덧붙여 철야수사의 금지, 사건기록의 열람 허용 등이 검찰수사 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의 또다른 중요과제라고 할 수 있다.

1) 철야수사 금지

가. 필요성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는 철야수사 또는 밤샘조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특히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일수록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공공연하게 철야수사가 진행되어 왔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철야수사는 사실상 무형의 폭력이다. 유엔 고문방지조약 제1조는 "고문이란 공무원이나 공무수행자가 고의로 개인에게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철야수사는 위에서 말하는 고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철야수사에 대한 포괄적 금지조항과 철야수사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를 위한 근거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잠을 재우지 않는 상태에서 받아낸 자백은 자유로운 의사로 진술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95도1964).

그러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강행하기 위해 철야수사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철야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철야수사금지규정

은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나. 철야수사의 범위

철야수사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수사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단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7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하여는 정신적, 육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오후 9시 이후에는 수사를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긴급체포 등으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있어 본인이 명시적으로 철야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철야수사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24시간 이상 계속 수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어 피의자가 피로에 지쳐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을 정도가 된 상태에서 신문은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철야수사로 얻은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되, 본인이 명시적으로 철야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긴급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철야수사에 대한 제재

자정이 넘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도 피의자에게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반드시 수사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고, 피의자에게 시간을 확인하게 할 것이며, 피의자가 철야수사에 동의하는 경우 그 동의의사를 조서에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철야수사로 얻은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외에도 위법한 철야수사를 한 수사담당자에 대하여 강력한 징계 및 형법 제125조에 의한 처벌을 함으로써 이러한 불법수사관행을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

2) 사건기록열람을 허용

가. 필요성

사건이 불기소되어 종결된 경우에 사건관계자가 사건의 수사내용 및 결정이유를 알리고 하거나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이의가 있어 당사자가 항고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열람하기 원해도 열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고발인이나 고소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지하게 되어 있으나, 불기소이유가 간략하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해 사건과 관련된 실질적인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소인 등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수사기록이 다른 사건의 증거로 채택되어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 또는 서증조사결정을 받는 경우뿐이다.

나. 불기소이유의 고지의무화

현재 고소사건을 무혐의 처분함에 있어 고소인에게 불기소한 사실을 통지하고 있는데 고소인으로서 불기소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검찰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유를 모른채 불기소 사실만을 통보받음으로써 수사결과에 대해 불신을 갖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불기소사실을 통지할 때 불기소이유까지 함께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불기소이유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적시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불기소사건의 경우 검사가 최종적으로 법률판단을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법원의 무죄판결에 준하는 구체적인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사건기록의 열람허용

궁극적으로는 당해 사건의 고소, 고발인에 한하여 당해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고소인에 한하여 불기소이유의 근거가 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관련 증거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가 수사상의 기밀유출이나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가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마치며

이상, 최근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관행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을 중심으로 철야수사금지, 사건기록열람 등의 제도적 개혁안을 살펴해보았다.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것이 검찰과 법무부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면서 마련된 기회이지만 검찰은 이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인권보장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수사력의 보장을 위해 반인권적인 제도를 신설하려고 한 이번 법무부 개정안은 유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들이 '검찰을 두려워하나 존경하지는 않는다' [검찰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권위주의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 그것은 [검찰의 위기]가 앞서 살펴본 인권침해수사에 의해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실시, 검찰인사위원회의 강화, 검사동일체원칙의 폐기 등 수많은 개혁과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뿌리깊은 불신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특별검사제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재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바뀌어야 한다.

기자가 본 서울지검

안창현(한겨레신문 기자)

노무현 후보가 대선에서 이긴 게 1달 전 일이지만, 벌써 시간의 거리가 까맣다. 대선 결과를 둘러싼 수많은 보도와 언술들이 이미 '인수위 흔들기'로 옮겨간 지 오래인 탓이다. 항차 지난해 10월말 열흘 동안 휘몰아쳤던 서울지검 강력부 고문치사 사건은 말해 뭐하랴.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곱씹어보는 것은 여기에는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까닭이다.

#서울지검 특조실의 영욕

(註: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이 부분은 필자의 <한겨레21> 기사를 수정한 것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 11층 특별조사실. 침대와 화장실을 갖춘 7개의 조사실과 거짓말탐지기실까지 갖고 있는 이곳에 대해 검찰은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수많은 권력형 비리 사범들이 여기를 거쳐 '쇠고랑'을 찼다. 검찰 한 고위 간부가 "특조실은 수사의 상징이며 일종의 비밀 시설"이라고 말할 정도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낮 검찰 수사의 심장부인 특조실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조사를 받던 용의자가 '갑자기' 쓰러져 강남 ○병원에 옮겨오나 숨진 것이다. 더불어 같은 혐의로 조사받던 최아

무개씨가 이중 철문이 설치된 특조실에서 도망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났다. 당시 서울지검 간부들은 전날인 25일 병풍수사 결과 중간발표를 마친 뒤라 꿀맛같은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2주동안 몰아쳤던 태풍은 그렇게 시작됐다.

경기 파주 사파 조직폭력의 행동대장인 조천훈(32)씨는 98년, 99년 조직 내 세력다툼 끝에 일어난 두 건의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주임검사인 강력부 홍경영 검사는 의정부지청 근무시절부터 사건의 단서를 잡고 3년동안 이 사건을 추적해왔고, 이제 '작품'을 완성할 단계였다. 경찰에서는 자살과 미제사건으로 마무리했던 살인사건인만큼 범인을 일망타진하면 검찰 총장 표창도 받을 훌륭한 수사였다.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서울지검 간부는 몰려든 기자들에게 "26일 아침 6시까지 조사를 하다가 재웠고, 낮 12시께 점심을 먹이기 위해 깨웠더니 갑자기 쓰러졌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특히 "무릎을 꿇렸을 뿐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더구나 조사받던 조씨가 붙잡혀 오기 전에 아침까지 술을 마셔 피곤했다며 사고사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때까지는 검찰과 대부분의 언론은 사태를 그다지 심각하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인사건 용의자인 조직폭력배가 어쩌다 쓰러져 숨진 것 정도 아니냐. 사실 조씨는 은몸에 용 문신이 새겨진 전형적인 조폭이었다.

다음날인 28일 아침 기류는 급변했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전날 국과수의 부검 결과 구타의 단서가 잡힌 것이다. 서울지검 형사3부장은 이를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직보했고, 곧바로 대검 감찰부 검사 4명과 서울지검 검사 3명이 착출돼 대검 차원에서 수사팀이 꾸려졌다. 이 무렵 청와대는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멕시코에서 국제회의에 참가중이던 김대중 대통령이 이 소식을 접하고 대노했다는 후문이다.

대검 조사 둘째날인 29일 검찰은 전격적으로 채아무개(40) 수사관 등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독직폭행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서 밝혀진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들은 지난 25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숨진 조씨한테 수갑을 채우고 머리를 박게 한 뒤 허벅지와 낭심 부분을 수 차례 발로 차거나 밟았다는 것이다. 사인과의 연관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했다. 그래도 검찰 내부에서는 "설마 피의자가 맞아서 죽었겠나.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은 조사할 때 진압을 위해 약간의 가혹행위는 있었으니 그 정도 아니겠나"는 기대가 많았다. 약에 취한 마약사범을 붙잡아 오는 경우 '어쩔 수 없는' 약간의 위협은 수사상 꼭 필요하다는 논리로, 사실 검찰 상층부와 이를 눈치챈 언론도 눈감아주는 부분이다. 더구나 숨진 조씨는 두 건의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조사받던 조직폭력배였다. 교

과서에는 인권과 정의가 다른 항목 아래 놓이지만, 현실에서는 날카롭게 서로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이다.

아무튼 검찰 주변의 눈은 일제히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쏠렸다. 부검결과는 구타와 조씨 사망의 인과관계를 밝혀줄 유일한 '물증'이 되는 까닭이다. 부검결과는 애초 예상보다 늦어졌다. 그런데 사건의 파장은 엉뚱한 곳으로 번졌다.

10월 31일 오후 <한겨레>는 숨진 조씨의 공범으로 구속된 박아무개(28)씨가 '이상한'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처음으로 포착했다. 용주골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박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홍 반장' 등 수사관들이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 물을 부어 기절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대검 감찰부 관계자는 "그런 주장이 있어 조사중"이라며 "하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를 상세히 보도했고, 이 무렵부터 이제껏 단순 구타 사실 정도로 바라보던 다른 언론들도 적극적인 보도태도를 갖기 시작했다.

역시 국과수 부검결과가 대세를 결정지었다. 국과수는 2일 저녁 "조씨가 광범위한 좌상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인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고문치사다. 결국 '설마'가 사람을 잡았다.

'줄초상'이 이어졌다. 이명재 검찰총장과 김정길 법무장관은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주저없이 수리했다. 막바지로 치달던 대검 감찰부의 수사는 7일 새벽 4시20분께 종착역에 닿았다. 홍 검사에 대해 독직폭행의 공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 끝에 7일밤 홍 검사는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구치소는 그동안 홍 검사가 구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홍 검사의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모습을 지켜본 수사 검사들은 그날 밤 통음했다고 전해졌다. “이번 수사를 하면서 엉엉 울었다. 며칠 전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 아니었나. 수사하면서 울었고, 구속집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엉엉 울었다.” 술자리에 참석한 검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여기가 끝일까. 8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국민들을 또다른 충격에 빠뜨렸다. 물고문이라는 복병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검찰은 “구속된 박씨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조실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박씨의 윗도리 운동복이 물에 젖어 있었음을 기억하는 결정적인 목격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죄가 아니라 죄인이 많다?

최근 노무현 당선자 정권인수위원회에 대한 경찰청 업무보고를 계기로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면서 검·경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경찰쪽은 국민불편과 비효율성을 명분으로 검찰과 동등한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은 절대 수사권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6일치 <조선일보>에 현직 대검 간부가 한 편의 글을 기고했다.

“대륙법계 검찰의 임무는 수사경찰의 활동을 법관과 똑같은 자격을 가진 검사의 통제 아래 뒤 수사절차에서의 위법한 법집행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형사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 다시 한 번 ‘검찰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검찰은 오로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정신은 정의를 향한 열정이며 선과 악에 대한 분별심이고, 고도의 책임감이고 절제된 용기이며 지혜이다.”

수사권 문제와 별도로 이 글에 나타난 것처럼 정의를 추구하는 고귀한 검찰정신에 대해 세인들은 모자를 벗어 존경의 뜻을 표할 것이다. 하지만 검찰정신이 온전히 정의로만 채워진 것일까. 무엇을 위한 정의인가 곱씹어봐야 한다.

구속된 홍경영 검사도 이런 정의감이 충만했던 검사로 알려져 있다. 실제 많은 검사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다. 정의감이 앞서다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많은 검사들이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홍 검사를 찾아 위로했고, 소송비용을 돕기 위해 모금운동도 벌여졌다. 검사들이 홍 검사를 변호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깊은 안타까움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사실 검찰의 사회적 역할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정권이 공안검사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는 ‘정치적 부분’을 빼면, 수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신원(伸冤)하고 안녕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그 정의의 잣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즉 피의자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정의의 참뜻이 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고전적 금언은 이를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검사들은 ‘반쪽짜리 정의감’이라는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고문치사 사건이 검찰 내부의 낮은 인권의식과 자백수사 관행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백의 증거능력이 떨어지고 있다지만, 검사는 자백을 수사의 완성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기소 검사라면 법원의 유죄 결정을 받아낼 책임이 있게 마련이고 자백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인 까닭이다. 사실 중대 범죄자라면 형량도 높을 텐데 피고가 자백도 하지 않는 상태라면 판사라도 유죄 판결을 내림에 한번 더 머뭇거

리는게 사실이다. 또 복잡하고 어려운 수사일수록 자백은 얼마나 간편한 수사 방법인가. 이런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자백은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간판을 내려야 하는 자괴감을 가지고 2주일을 지켜보아야 했다”며 “이제 검찰은 ‘수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수사의 패러다임, 과연 바뀔 것인가.

자백수사 지양외의 대안으로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이 과학 수사다. 외국 영화에서 처럼 첨단 과학장비를 가지고 멋지게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콤한 상상과 다르다. 그 돈을 누가 감당하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의 표정은 피의자 뒷줄에 있는 참고인이다.

지난해 11월 중순 신임 심상명 법무장관은 9개항의 ‘고발수사 재발방지대책’을 밝혔다.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 참여 허용과 과학수사체제로의 전환을 표명한 것이다. 문제는 그 뒤 조항들이다. 법무부는 피의자 인권 보장 강화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수사력 유지를 위해 △참고인 허위진술죄와 △참고인 구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지를 밝힌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피의자로부터 얻을 수사 단서는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범죄 억제를 위해서는 제3자인 참고인의 진술에 많이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건전한 시민이라면 성실한 증언의 임무를 새로 지우겠다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악용의 소지가 남는다. 검찰 입장에서는 절실한 참고인 또는 증언자라고 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의 새로운 강제조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인권 침해 소지 지적을 두고 법무부는

“참고인 구인제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되는 것으로,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다”고 말했지만, 변호사 단체 등은 벌써부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확실히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수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이 변화의 방향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현실에서는 어떻게 구현될지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필자의 능력 밖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고문치사 사건이 검찰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이다. 또 이를 통해 우리의 인권 수준이 한 걸음, 아니면 반 걸음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지는 시민의 감시와 토론이 결정할 것임도 확실하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이정희(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1. 들어가며

1966년 체결된 이래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지난 해 그 어떤 법보다도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개정하라는 촛불이 나라 안을 뒤덮고, 나라 밖 멀리서도 촛불을 밝혔다. 그러자 최근 한국 정부는 2000년 개정된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일미소파나 독일보충협정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고 불평등하지 않다는 홍보작업에 상당한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지위협정 합의와 적용의 주체인 정부로서는, 먼저, 과연 실제로 협정으로 인한 제약이 없었는지, 협정이 평등하게 운용되어왔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환경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미군시설에 관하여 한국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정 제3조에 의해 미군당국이 시설과 구역 관리권을 가진다는 포괄적 규정을 이유로 미군시설 내의 환경오염에 대해 한국 환경법상 아무런 규제도 적용하지 못했다. 용산 미군 기지 내 호텔신축문제에 관해 미군의 시설관리권 때문에 한국 건축법

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외교통상부의 해석에 따르자면, 환경부의 속수무책은 협정의 필연적 제약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협정에는 공무중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약하는 규정이 없으나, 최근까지도 수사기관은 공무중 범죄이면 아예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 스스로 2002. 6. 13. 발생한 신호순 심미선양 압사사건에서 처음으로 공무중 범죄를 수사했다고 할 정도였다. 비공무 범죄이더라도, 경찰의 조치는 피의자 신원 확인에 이어 미군당국에 연락하여 신병을 인도하는 것 뿐이었다. 2000. 12. 28. 개정시 신설된 신병인도 전 예비수사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동현장조사가 합의된 후에도, 아직 실행된 바 없다.

이처럼 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던 한국인들이 비로소 협정개정을 요구하자 한국 정부가 때를 맞추어 외국의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손색이 없다는 데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외국 협정보다 불리해서는 안 되겠기에 외국 협정이 비교연구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나, 외국 협정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평등성을 평가

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그 나라에서도 협정의 불평등성에 대한 논의가 많은 현 상황에서, 외국 협정이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의 상한선이 될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정부가 공무증명서의 증명력 판단에 대한 미일 소파의 규정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없고 따라서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손색이 없다는 논거로 드는 1974년 이에지마 사건을 본다. 당시 일본은 미군 당국의 공무증명서의 내용을 다투었지만 공무증명서는 반증이 없는 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합의의사록 규정 때문에 공무증 판단을 뒤집지 못해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고 한다. 공무증인지 여부에 관해 양국 사이에 다툼이 있어도 최종적으로 미군당국의 판단에 의해 공무증인지 여부와 1차적 재판권 귀속이 결정된다는 것은 주권국인 접수국에게 불평등한 규정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입장에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관한 양해사항은, 일미소파에 없는, "공무증명서는 그 수정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결정적이다"라는 규정을 두어 미군당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였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문언상·실제상 불평등을 제거하라는 것은 한국민 대다수의 요구이다. 정부의 임무는 이를 반영하여 불평등 제거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지, 외국 협정도 우리보다 낫지 않으니 참으라고 국민들에게 혼계하는 데 있지 않다.

2.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선인가 개정인가

국민들의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요구에 대하여, 한미 양국 정부는 줄곧 개정이 아닌 운용 개선만을 거론하여왔다. 그 첫 결과물로, 2002. 12. 30. 한미합동위원회는 "초동 단계 수사 등 협력 강화 방안"에 합의하였다. 그 내용은 초동 수사시 공동 현장접근 및 공동 조사에 대한 협력, 미국 정부대

포의 상시 1시간 내 출석, 신병인도 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적극 협조, 수사 대상자의 초상권을 보호하여 원활한 수사협조를 촉구, 수사상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공 상호협조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는 이 합의사항에 따라 형사재판권의 실질적 운영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미양국간의 수사협조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고, 위 내용은 이 점에서 일정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좀 더 심각하다.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미국 정부 대표의 출석 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인 조항을 그대로 둔 채 미국 정부대표를 즉시 출석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한국의 사법주권이 확립되는가. 범행현장이나 미군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기 전의 현장 부근에서 체포한 살인이나 죄질이 나쁜 강간피의자가 아니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한국 수사기관이 미군당국에 신병을 인도해주어야 하는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 규정 때문에 일선 수사기관이 증거수집에 곤란을 겪는 상황에서, 신병인도 후 출석요구에 협조한다는 약속만으로 사건의 진실발견과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분하겠는가. 협정의 불평등 조항 자체를 남겨둔 채 운용개선에 관한 합의사항을 채택하는 것만으로는 한국 사법주권 확립은 요원하고, 피해자 권리보호는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국 수사기관이 미군당국에 대해 공동 현장접근과 관련자료제공 등을 강제할 수 있으려면, 주로 절차적·기술적 규정으로 구성되고 법적 강제력이 약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이 아니라 한미양국의 실체적 권리의무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본협정이나 합의의사록, 양해사항에 규정되는 것이 맞다. 그런 점에서도 이번 합의사항은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생각해본다. 왜 일부가 아닌 전면 개정인가. 형사재판권 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 시설과 구역, 노무, 민사청구권 각 분야의 개정이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권 분야만 보아도 신병인도시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개정이 없었다. 정부는 이를, 형사재판권 관련 규정들 중 실제 별로 사용되지 않는 불평등 조항은 협상 전략상 적극적으로 개정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다룰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법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의 반영이자, 의식을 만들어낸다. 존재하는 이상, 만에 하나라도 적용될 경우 정의와 형평을 손상시키고 사회구성원들을 절망에 빠지게 한다. 그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은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더구나 형사재판권 규정은 국가의 자존과 사법주권에 관한 것이어서, 불평등 조항은 실제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존재 자체로 주권을 유린한다. 21세기에도 미국과의 협상전략상 대한민국의 주권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면, 한미관계의 근본을 재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아래에서는 주로 형사재판권 부분과 민사청구권 부분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짚어본다.

3. 형사재판권 분야

1) 재판권

우선 문제되는 것은 형사재판권 관련 규정의 인적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군인 또는 군속의 직계 가족 아닌 기타 친척과 초창계약자에게까지 피고인의 권리보호조항, 신병인도조항, 형집행시 구금인도조항 등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외국협정에도 유례없는 것이어서, 삭제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1차적 재판권의 귀속이 문제된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오로지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 또는 미국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와 공무집행중의 범죄는 주한미군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갖고, 기타의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갖는다고 하여(제22조 제3항), '공무집행중의 범죄'인지 여부가 형사재판권 행사의 중대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합의의사록은, 미군 장성이 발급하는 공무증명서가 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하고, 양해사항에 따르면 한국측의 이의가 있더라도 미군당국이 수정하지 않는 한 공무증명서는 결정적이다. 1차적 재판권의 귀속이 접수국 법원이나 중립적 기관의 결정이 아니라 미군 장성의 공무증명서에 따라 좌우되도록 한 것은, 국제법상 주권존중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판권의 부당한 제한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근본적으로는, 최근 신호순 심미선 양 암사사건처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공무중 범죄에 대하여도 미군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제1차적 재판권 포기에 관한 규정도 문제이다. 합의의사록은 미군당국의 재판권포기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정하고 있어, 1992년 미군인의 비공무 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율은 1.6%, 2000년에는 7.4%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재판권포기 후에는 미군당국에서 엄정한 형사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9년에 대한민국이 재판권행사를 포기한 511건에 대하여, 미군당국은 교통사고사범등은 입건유

예하고 나머지 292건 중 240건은 전책, 28건은 강등, 14건은 사역, 6건은 급료몰수, 4건은 불명예제대로 처리하였고, 형사처벌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¹⁾ 이렇게 비공무 범죄 상당수에 대한 재판권 포기와 미군당국의 형식적 처리의 결과,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의 사과도, 배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미군범죄에 대한 불만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미군당국은 2002. 6. 13.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압사사건에 대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인 한국 측의 재판권포기요청에 대하여 전혀 호의적 고려를 하지 않았고, 이는 재판권포기조항이 일방적으로 미군 측에 유리하게 운용되어온 현실을 보여준다.

2) 수사과정

최근 합동위원회에서 채택된 초동수사강화에 대한 합의사항은 초동수사를 위한 일정한 개선점을 담고 있으나 체포 구금 등 강제수사권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수사에 근본적인 제약요소가 되고 있다.

2000. 12. 개정된 본협정에서는 기소시 대한민국이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게 하였으나, 합의의사록에서는 그 대상범죄를 살인, 강간, 석방대가금 취득목적의 약취·유인 등 12개 중대범죄로 하고, 범위의 확대에 관해 의논할 수 있다고만 하여, 기소시 신병인도 원칙을 예외로 만들어버렸다. 또 합의의사록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있는 현행법 체포시에도 살인 및 죄질이 나쁜 강간죄의 경우에만 대한민국이 계속 구금하도록 하는데, 죄질이 나쁜 강간이라는 표현은 우리 형법체계에 없는 개념으로 그 인정범위를 둘러싸고 양국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고, 영어본 우선 조항으로 한국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차제

에 그 법정형이 일정 수준 이상 중하고 구속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를 위하여 구금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 재판과정

한국 법원이 재판을 열 경우, 송달 문제가 가장 먼저 제기된다. 맥팔랜드 사건에서는 미군당국의 비협조로 공소장 송달에 실패하여 기일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미군당국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송달절차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형사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부대장송달 규정을 두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미국의 위신에 합당한 조건이 아니면 재판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 미국정부대표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그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사법부의 재판진행과 증거판단에 과도한 제한을 두는 것이고 현 상황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서, 삭제되어야 한다.

합의의사록(제22조 제9항)에 의하면 검사는 유죄가 아닌 판결 또는 무죄판결과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는데, 이는 상이한 법체계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미국법상의 원칙을 주권존중의 원칙에 반하여 대한민국이 받아들여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독일보충협정이나 일미협정에도 유사한 규정이 없어 삭제되어야 한다.

또 형집행상 합동위원회가 정하는 시설과 수용자 대우에 대한 최소한도의 수준을 충족하도록 되어있으나(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미군 수형자에 대하여 미국내 수형시설에 비하여도 호화스러운 정도의 수감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형으로 처벌되는 예가 극히 적은 미군범죄자

¹⁾ 200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자료, 재판권행사 포기한 미군인 범죄에 대한 미군측의 조치내용.

들에게 형벌의 최소한의 위하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서,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민사청구권 분야

1)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에서 문제점

공무집행중 불법행위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배상금분담에 관한 것이다.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배상요구는 최근 상당히 증가하여, 1999년 한해 동안 배상신청건수가 733건이었고, 그 중 443건에 대하여 모두 14억 5천만원 가량의 인용결정이 내려졌다.²⁾ 그런데 본협정 제23조 제5항 마호는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군당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이 배상금 등의 25%를 부담하고, 대한민국과 미군당국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가 균등히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미군당국은 이것이 미군당국의 과다한 배상금부담을 덜고 접수국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토 소파에서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한민국이 아무런 책임 없이 25%의 배상금을 부담하고 그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과실이 있기만 하면 50%의 배상금을 부담하는 것은 과실책임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³⁾ 또 아이슬랜드와 미국간에 체결된 "합중국의인원및재산의지위에관한 1951년5월5일자협정에대한부속서"⁴⁾ 제12조 제2항 제5호는 미국이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경우 그 배상금의 15%를 아이슬랜드가, 85%를 미합중국이 분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분담률 역시 고정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다음으로는 본협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공무집행중의 행위 또는 공용차량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정부재산이나 군대 구성원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이 그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였는데, 국고관리의 차원에서, 이 조항들은 적어도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양국 합의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2) 비공무 사건에 대한 배상에서 문제점

비공무 사건에 대하여는 지구배상심의회의 배상금사정 및 미군당국에 대한 통보, 미군당국의 결정이 있어야 배상금이 지급되는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 조달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는 독일이나 호주처럼 미군의 공용 또는 개인차량이 모두 종합보험에 들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는바, 본협정에 이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2001. 1. "민사재판절차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 사항"이 채택되어 비공무중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일정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민사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체계상 독일보총협정과 같이 본협정 또는 그 부속문서에서 조약으로 체결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또 미군의 임금에 대해 보전처분도 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하고, 배상책임 있는 미군이 출국할 경우 연락기관이 그 주소파악이나 해외주둔시 연락협조 등의 원조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의 결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구금에 대하여 공무중 사건으로 인한 청구에 관한 것이면 미군당국의 공무증명서에 따라 구금되지 않도록 한 것은 민사재판절차의 일관성을 훼손한 것으로,

²⁾ 200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자료, 협정배상건수 및 금액

³⁾ 실제 분담비율을 살펴보면, 1999년에 양국의 공동책임이 인정된 것은 6건(1.3%)에 지나지 않고, 2000년에는 배상신청이 인용된 372건 중 2건(0.5%)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경우 아무 과실 없이 한국인의 세금으로 미군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왔다.

⁴⁾ ANNEX TO THE AGREEMENT OF MAY 5, 1951, ON THE STATUS OF UNITED STATES PERSONNEL AND PROPERTY

공무중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을 때에는 그 합의에 따라,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민사청구권의 실현과정에서 공무집행 중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한국인인 중재인이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비공무사건에 있어서는 배상금사정금 또는 판결금과 미군당국의 배상결정금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미군당국과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협의하는 등 미군당국의 배상결정금이 한국측 결정을 존중하여 피해구제에 적절한 것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소송원조 범위를 넓혀 피해자의 구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5. 글을 맺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의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사실을 정확히 보고 문제를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는 법률가의 공정한 눈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는 이렇다 할 법률적 연구물을 별반 찾아볼 수 없고, 선택로 삼을 만한 판례도 매우 드문 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법률가들의 무관심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운용 실무가 활발히 개선 발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무관심과 빈곤함은 헌법이 기본권제한이 가능한 경우로 명시한 국가안보가 전가의 보도처럼 해석되어 온 우리의 근대법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국가안보를 논의의 여지가 없는 최상의 가치로 받아들여온 사회의식, 또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미군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 온 피해자들의 의식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에 내세운 법운용이 가져온 결과이다. 법의 기본임무가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국가안보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되어왔다. 법이 국가의 주권의 발현이라는 것도 명백한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한미동맹관계유지를 위하여 제 모습을 찾지 못했다. 이제라도 앞뒤를 바로 잡자는 요구가 피해자들과 일반 국민들로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법률가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군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다양한 소송을 제기하고 안보문제를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일본의 법률가들과 비교해보면, 필자 스스로도, 우리 법조계 전체로도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법이 사회의식을 선도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본권존중과 주권확립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 뒷받침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SOFA, 어떻게 풀어야 하나

여인학(변호사, 법무법인 권길)

지난 해 12월 3일 용산 미군기지 메인포스트 21번 게이트 근처에서 기름이 새나왔다. 수도관 교체작업을 할 때 뚫겨나온 냄새를 맡고 시민들이 제보를 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흙은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미군기지 담벼락을 따라 패인 구덩이에 기름이 흥건하게 펴 정도였다.

설 새 없이 터져나오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건

2001년 5월 용산기지 근처 녹사평역과 원주 캠프 롱 기지 부근 기름유출, 2000년 평택 송탄 미군기지 항공유 유출, 98년 백운산 매디슨 기지 경유유출 등등, 몇 년째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 사건들이 잇따라 터졌다. 2001년 말에 나온 미국정부 자료에서는, 90년대 주한미군 기름유출 사고는 한 해 평균 8.4건, 92년에서 99년까지 사이에 모두 67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건 물론 미국 스스로 발표한 통계자료다. 또 환경오염 사건 전체가 아니라 기름유출 사고 건수만 따져서 그렇다는 거다.

미8군 소속 맥팔랜드가 시체 방부제로 쓰이는

독극물 포름알데히드 약 500병을 하수구를 통해 한강에 쏟아버린 사건이나, 미 공군이 매향리 영월 영주 등지의 사격장에서 폭격연습을 하는 동안 인근 주민들을 악몽에 시달리게 하고 우리 금수강산을 병들게 한 사례, 미군 부대에서 오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사건들까지 다 합치면 책으로 몇 권을 써야 할 지경이다.

미군기지 안팎의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안돼

그런데 실은 주한 미군기지 안팎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나라 국방부도 외교통상부도 환경부도 관할 지자체도 잘 모른다. 토양이 얼마나 독성물질에 젖어 있는지, 지하수가 어느 정도로 썩어 있는지, 오염된 토양과 수질을 원상으로 복구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따위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이 벌써 여러 해째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군기지 안팎의 토양 수질 오염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조사된 역사가 없다.

기름이 팔팔 새나오거나 누군가의 제보로 시민

환경단체가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것이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가 된 다음에야 비로소 문제로 다뤄지게 된다. 미군 스스로 이런 일을 우리 정부에 알린 적은 물론 없고, 우리나라 행정기관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미군기지 내 또는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거나 확인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 행정기관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작년 12월의 기름유출 사건 때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서울시 용산구청 등이 행정권한을 적극 행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토양오염 정도가 대책기준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용산 미군기지 내 호텔신축 문제를 놓고 당시 용산구청장 성장현과 미8군 사이에 상당히 심각한 싸움이 있었다. 그 때 '국내법을 무시한 호텔신축을 중단하라'는 용산구청장의 정당한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건 다름 아닌 외교통상부였다. '미군의 시설과 구역에는 우리나라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식으로 SOFA 규정을 유권해석했던 것이다. 과연 그럴까?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우리나라 행정청이 환경관계법상의 각종 의무를 지우고 조치명령과 같은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규정에 따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공여지가 식민지 시대의 치외법권 지역이 아닌 이상, 그 공여지에 대해 미군의 1차적인 관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

도 대한민국의 영역주권은 여전히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SOFA에서도 미군의 한국법 준수 의무를 명시해 뒀고(제7조), 합의의사록에까지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준수한다'고 밝혀 놓은 거다.

둘째,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의 주범인 맥팔랜드를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은 한국의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2001년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대구시의 미군기지 캠프워크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은 불기소처분을 했지만, 미군시설 책임자에게 토양환경보전법상 신고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02년 미군의 기자폭행 사건과 관련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법원 검찰 행정기관들이 공여지 내에서 미군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행정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학적인 정화비용, 누가 부담하나

사례 하나. 미군이 주둔했던 필리핀 클라크와 수비크만 일대는 미군이 철수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경재앙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을 피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미군이 떠나간 클라크 기지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2년에서 5년 가까이 살면서 우물물을 먹었던 주민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했다. 95년 이래 사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된 사람만도 88명에 이른다. 해군기지가 있던 수비크에서도 백혈병 환자들이 수두룩하게 발생했고, 군함에서 석면에 노출된 채 일했던 노동자들 중 100명

이상이 숨졌다.

최근까지도 수빅만 부근의 산 속에는 독극물이 담긴 수백 개의 드럼통이 내버려진 채 악취를 내뿜고 있다. 클라크 기지에서서도 병원 폐기물을 포함해 매일 5톤의 쓰레기 6트럭분을 근처 강에 내다버렸고, 지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도 오염물질을 흘려보냈다.

2000년 7월에 피해자 200명이 미국정부에 1020억 달러를 배상하고 기지를 정화하라며 소송을 낸 상태지만, 예상했던 대로 미국은 책임지기를 거부하고 있다. '기지를 반환할 경우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다'는 필리핀-미국 주둔군지위협정의 규정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사례 둘. 1953년부터 1971년까지 약 20기의 미군 저유시설 18기가 설치돼 있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문학산. 그 일대 8만평은 미군시설에서 흘러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벤젠과 톨루엔 따위의 발암물질로 오염된 채 죽은 땅으로 방치되어 있다. 인천보건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오염도는 기준치의 4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심한 곳은 34배를 넘는단다. 건물신축 용지로도 쓸 수 없는 지경이다. 79년 이후로 오염지역에서 가까운 학골윗마을의 30여 가구 주민들 가운데 11명이 암으로 죽었고 그밖에도 몇 사람은 암 투병 중이다.

이런 사태에 대해 미군은 털끝만큼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71년 유류저장시설을 한국업체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국방부가 미군 저유탱크가 있었다는 사실만이라도 확인해 줄 것을 미군 쪽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지만 '문서보존 연한이 지나 알 수 없다'는 대답뿐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미군기지는 용산기지 넓이의 100배. 조만간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그 중 일부가 반환될 예정이고, 언젠가는 모두 되돌려

반게 될 땅이다. 최근의 오염사례만 보더라도, 반환반게 되는 땅의 상당 부분이 필리핀의 클라크 수빅나 인천 문학산과 같이 독성 폐기물에 찌르고 기름에 젖어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2001년 용산기지 주변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이 문제가 됐을 때, 서울시가 '미군기지 내에서 오염원이 발견될 경우 당연히 오염제거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주한미군은 대변에 "현행 SOFA에 미군이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복구비용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이 없다"며 오리발을 슬쩍 내비쳤다.

게다가 현행 한미행정협정, 즉 SOFA 제4조에는 '본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미군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한국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원래 미군의 환경오염 복구의무를 면제해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보고 있다. SOFA 일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미행정협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들은 합중국 군대가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에 관한 보안조치나 그 반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이고 환경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협정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합중국 군대가 공여받은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이나 인간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규정들은 합중국군대에게 그 공여받은 바의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지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고 있다.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에

SOFA 개정이 필요한가

95-96년 SOFA 개정협상 당시 한국측은 '①주한미군 당국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한민국 환경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주한미군 당국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절차에 따라 환경적으로 중요한 사업의 환경영향을 확인 분석 평가해야 한다. ③주한미군 당국은 우리나라에서 요청하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내의 환경상태 조사와 그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대해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협상문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미군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거나 한국법 적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버티다가, ① 미양국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 합의를 자연환경보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②주한미군 당국은 자체 활동이 공여시설 및 구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주기적으로 조사 확인 평가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합의의사록"에 담자는 식으로 태도를 약간 바꿨으나, 협상은 중단되고 말았다.

2000년에 협상이 재개되어 2000년 12월 28일 SOFA개정이 확정됐다. 환경관련 조항도 일부 신설됐다. 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극히 미흡한 수준에 그쳐, 미군쪽의 자발적 협력이 없는 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대책마련도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우선 환경관련 조항이 일부 들어간 곳은 본협정이 아니라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과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다. 합의의사록에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정부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고 돼 있고, 특별양해각서에는 '합동위원회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한국공무원의 적절한 출입절차를 마련한다'는 등

의 내용이 들어있다.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가 채택되어 '환경사고 발생시 통보절차, 공무원의 기지출입절차, 공동조사팀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나라 공무원과 미군당국간의 행정적인 협조절차를 느슨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적인 협력사항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아무런 수단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SOFA 환경조항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하나

미군기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행 SOFA는, 급한 대로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첫째, 평상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본협정에 "미군기지 내의 환경오염이, ①기지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②상당한 기간 동안 오염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한국의 환경관계 법령을 적용하여, 미군당국은 그 법령상의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한국의 행정청은 미군당국에 대하여 조치명령 등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

둘째, 협정 제4조 제1항의 '시설과 구역에 대한 원상회복 및 보상 의무 면제' 규정이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부담 면제' 규정으로 악용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속문서에 '협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이 반환되는 시설과 구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의 원상회복·비용부담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정도의 주의규정이 신설돼야 한다.

호순이와 미선이, 그리고 소파 개정

유영숙 수녀님

“소파 개정”

“부시 대통령 직접 사과”

“재판 무효”

“미군 폭력 없는 세상을!”

연일 계속되는 모임, 집회, 시위, 기도회에서 등장하는 구호다.

대중 한가운데 섞여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가끔 생각해 본다.

“내가 왜 여기에?”

어떤 이들은 말한다.

“수녀들이 기도나 하지 웬 시위 현장에?”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아무 걱정없이 조용히 내 생활에 몰두 할 수 있는 세상이면 정말 좋겠다.

내일 하가에도 벅차고 힘이 드는데 모든것 다 밀어놓고 정말 꼭 해야할 첫번째의 자리에 ‘소파 개정’을 놓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라도’라는 마음으로 바쁜시간 쪼개어 가며 함께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젠 내면에서 외치는 하느님의 소리.

양심의 재촉이다. 하느님 정의의 실현이고 그리스찬 삶의 실천이다.

사실 매주 둘째주 화요일 2시면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에서는 비가오나 눈이오나 집회가 열렸다. 3년이 넘도록 한사람이 모이든, 두사람이 모이든, 어김없이 지켜온 소파개정 집회의 선두에는 문정현 신부님이 계신다. 짧지않은 그시간동안 때로는 빨갱이라고, 불순분자라고, 술하게 맞기도 하고 끌려 다니기도 하셨다. 세상에는 SOFA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저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든 마냥 미국은 우리의 은인이고 우방이라고 굳세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미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피울음을 우는 사람들이 또한 적지 않다.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바로 바라보는 지혜가 있었다면, 그래서 SOFA를 제대로 개정했다라면 환

한 대낮에 미선리와 효순이가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었을텐데……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 여름 6월 13일. 너도 나도 서로 다투어 붉은옷 입고 시청앞으로, 대학로로, 해운대로, 충장로로……“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를 외치며 열광하던 그때.

미선리와 효순이의 억울한 죽음은 그 함성에 묻혀 가라 앉았다.

바로 그 한달전에 전동록씨가 같은 부대의 감전 사고로 몇차례의 수술끝에 만신창이가 되어 숨을 거두었는데 그 사건 역시 월드컵의 분위기속에 묻히고 말았다.

친구 생일 잔치 나들이를 나서며 조곤조곤 나누는 얘기에 행복했던 두아이. 한동네에 살면서 소꿉친구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함께 다니던 단짝.

엄마보다, 아빠보다, 친구가 더 좋을 열 다섯살. 세상에 대한 걱정보다 현재의 순간에 온통 마음을 빼앗길 열 다섯살. 그 열 다섯에 무참히 꺾여 버린 생명. 죽음의 길까지 함께 떠난 미선리와 효순이.

그것도 거대한 미군 웨도차량 바퀴에 무참하게 깔려 죽음의 길을 떠났다. 전라도아닌 이 평화로운 시기. 이땅에 전쟁이 끝난지 50년이 지난 이때에, 한적한 시골길에서……

사고 이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달려간 시민 단체를 통해 이 사실은 세상에 드러났고 곧이어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우리 천주교에서도 대책위원회가 구성 되었다. 이일만큼은 모든 국민이 함께 해주리라는 큰 희망을 안고 그들은 온힘을 다해 열심히 뛰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로 처리되어서는 안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두번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만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목표를 가지고서 많은 시민단체와 종교인들이 힘을 모았다.

서울에서, 의정부에서, 지방에서 많은 집회와 기도회가 있었지만 월드컵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맥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거리에 나선 수백만의 응원 인파를 보며 내 마음속에서 절로 우러 나오는 기도 - “이 응원의 열기를 두아이의 죽음으로 향하게 할수 있다면! SOFA 개정으로 돌아서게 할수 있다면! 시위행렬을 겹겹이 막고 있는 이 전경들이 우리와 함께 미군을 향해 외칠수 있다면!”

이건 나만의 기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두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 이나라의 운명을 마음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었을 것이다.

운전병과 관제병에게 무죄판결이 내리던날.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그럴줄 알았어”
“수녀님, 너무 억울해요”

“살아갈 희망이, 자신이 없어져요”

“나도 그래. 그래도 설마 했는데, 미국은 정말 우릴 뭘로 생각하는걸까? 도대체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고 현장 조사를 한다며 한국경찰은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미군들에 의해 일어난 사고를 미군들만이 현장조사를 하는 나라, 사고를 낸 미군병사를 미군검사, 판사, 변호사 그리고 배심원들에 의해 재판할 수 있는 나라, 그 미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런 법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은 또 어떤 나라인가?

그 오만한 미국앞에 우리 지도자들의 태도는 더더욱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사제들과 스님들, 목사들과 교무들이 연이어 삭발을 하고 그 추운 12월 된서리를, 찬바람을 맞으며 노상 단식 기도에 들어 갔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어른들이 그 순진한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잘못이라고며 그렇게 참회의 기도에 들어갔다. 함께 노상 단식에 들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도 결코 편한것은 아니었다. 따뜻한 방에서도 춥다. 추위 소리가 절로 나는데 이 매서운 추위를 맨몸으

로 막아내는 그분들의 모습이 우리를 편히 두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난게 아니었다. 우리들의 기도가, 몸부림이 결코 헛된 메아리가 아니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우리앞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자주 민주 국가인줄 알았던 대한민국이 결국 미군의 주둔하에 아무 힘도 없는 작은 나라일뿐임을, 그 오만한 미국이 우리의 진실한 친구나라가 아니었음을 실감하며 분연히 일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 오! 필승 코리아의 주인공들.

모이자. 시청앞으로! 대학로로! 충장로로! 다시 모이자! 거리 거리를 메운 촛불들의 속삭임. 세계를 향한 분노의 함성!

“미선이와 효순이를 살려내라!”

“불평등한 소파. 전면 개정하라!”

“부시 대통령 직접 사과하라!”



“사고 미군을 한국 법정에!”

그들의 함성을 들으며 떠 오르는건 만주 별판을
달리며 독립 운동을 하던 우리의 선조들, 고문과
죽음을 마다않고 일제에 항거하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다.

그들이 두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 본다.

“대한민국은 자주 민주 독립국가다”라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켜 냈
다”며

“너희도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 내야 한다”며

소리없는 말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가!



유전자정보은행의 필요성

이승환(배경경찰 과학수사와 실증)

1. 유전자감식

생명공학은 인류의 의료, 식량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첨단기술로 인식되어져 왔고 그간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인간 유전체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이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포스트 게놈 시대'에는 인류의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한 원인규명과 아울러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 의로서비스'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생명복제 기술의 오남용에 따른 생명의 존엄성 상실, 개인의 유전정보 누설에 따른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염려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생명공학 기술은 강력사건의 범인식별에 이용되는 유전자감식 기술을 낳았다. 이에 따라 성폭력을 비롯한 강력사건의 현장에서 적절하게 수집된 생물학적 증거물들은 범인을 지목하고 증거능력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유전자감식이 사용되기 전

인 1980년대 중반 이전, 범행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의 혈액형이 증거물과 동일하다는 사실은 증거능력 확보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혈액형의 종류는 4가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4명 당 1명이 같은 혈액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감식이 15년 정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법과학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의 하나로 꼽히게 된 것은 바로 이 확률의 문제에 기인한다. 유전자감식이란 인간이 세포내에 가지고 있는 23쌍(46개)의 염색체(DNA) 부분 중 STR이라고 불리는 특정부분만을 발취하여 분석하는 기법이다 (전체의 DNA를

그림1. 12 L34567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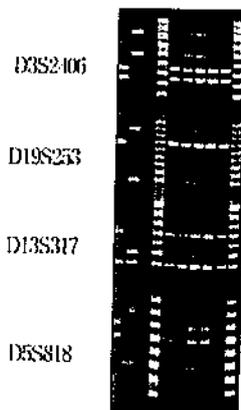


표1. 각 증거물의 유전자형

번호	증거물	D5S818	D13S317	D19S253	DXS2406
1	피의자모발	11, 12	8, 11	12, 12	31, 33
2	피해자모발	9, 13	8, 9	7, 11	36, 11
3	피해자속옷	11, 12	8, 11	12, 12	31, 33, 36, 11
4	정체증물	9, 11, 12, 13	8, 9, 11	7, 12, 11	31, 33, 36, 11
5	흉지부위1	9, 11, 12, 13	8, 9, 11	7, 12, 11	31, 33, 36, 11
6	흉지부위2	9, 11, 12, 13	8, 9, 11	7, 12, 11	31, 33, 36, 11
7	흉지부위3	11, 12	8, 11	12, 12	31, 33, 36, 11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려니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때 분석하는 부분에 따라 기법의 명칭이 달라지며 몇 부분을 분석하느냐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확률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림 1은 성폭력 피해자의 질채취물과 의류, 휴지에서 검출된 정액흔 등에 대하여 유전자감식을 실시한 결과이다.

유전자감식에 사용되고 있는 STR 부위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 정도에 이른다. 위의 결과는 각각 5번, 13번, 19번, 3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D5S818, D13S317, D19S253, D3S2406 의 STR 부위를 분석한 결과이다. 모든 사람은 각 STR 부위마다 특이한 DNA 밴드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전기영동이라는 분석방법을 통하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그림1). 이 밴드 패턴은 그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 고유의 번호를 붙여 코드화 할 수 있는데 이를 유전자형이라고 부른다(표1).

D3S2406 부위의 분석결과를 놓고 설명해 보자.

3번 증거물인 질채취물에서 31,33,36,41의 4가지 형이 관찰되었는데 이 중 36, 41은 피해여성 자신의 유전자형이므로(2번 증거물) 나머지 31, 33은 외부인 의 것, 즉 범인의 유전자형이다. 이 31, 33은 피의자의 유전자형과 정확히 일치하며 따라서 피의자를 범인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전체 DNA를 분석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 STR 부위만 분석했으므로 31,33이란 유전자형이 만일부동이 될 수 없고 우연히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은 또 존재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확률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혈액형은 4가지 종류 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D3S2406 STR 부위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은 171가지나 된다. 따라서 D3S2406 유전자형이 31,33인 사람은 간단히 산술적으로 말하면 171명 당 1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 3

부위의 STR에 대해서도 피의자와 동일한 유전자형을 얻었다.

우연히 위 4개의 STR 부위가 피의자와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질 확률은 6.46×10^{-6} 정도로 바꾸어 얘기하면 15만 4천 7백명 당 1명이 같은 유전자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4천5백만인데 이 정도의 확률로 특별한 정황증거가 없는 경우에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위험한 결론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른 STR 부위를 분석하여 동일한 피의자와 일치하는 유전자형이 보이는지를 관찰하면 된다. 총 10개 정도의 STR 부위를 분석한다면 아마 그 확률은 우리나라의 전체인구인 1/4천5백만을 훨씬 넘어 수억 혹은 수십억분의 일 혹은 그 이상에 이를 것이다. 물론 10개의 STR 부위에서 피의자와 다른 유전자형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그 피의자는 범인이 아니다.

2 유전자정보은행

가. 유전자정보은행이란 ?

유전자감식은 그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성폭력을 비롯한 강력 사건의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시행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 감식결과는 법정에서 유일한 법적 증거로도 채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감식은 용의자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만일 특정 강력사건으로 유죄를 인정받은 범인들의 유전자형이 전산보관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사건에서 1차적으로 용의자를 검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출소 후 저질러지는 재범행에 대해서는 많은 수사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범인의 검거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같이, 유전자정보은행이란 유전자감식 기술을 이용하여 강력범과 같은 특정집단의 유전자형을 입력, 보관하고 범인지목의 단서가 없는 미제

사건에 대하여 용의자를 검색하는 국가차원의 제도로 규정할 수 있다. 그 기대효과는 유전자감식의 효용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로, 입력된 사람들이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거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간을 매우 단축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피해자 신문 등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려놓은 일을 줄일 수 있다.

둘째로는, 범죄 예방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의 유전자형이 입력된 사람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불안감으로 범죄욕구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에 일어난 화성 연쇄 강간, 살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모든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사건의 범인은 지금도 검거되지 않았다. 이 당시에 유전자정보은행 제도가 있었다면 이 범인은 이미 검거되었을지도 모른다.

유전자정보은행은 다음과 같은 3개의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진다.

첫째, 인적사항 데이터베이스이다. 성명, 주민번호, 사진 등을 비롯하여 주소지, 전과경력, 최종범죄명 등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기재되어 있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모든 입력자마다 바코드나 숫자 코드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코드는 입력대상자의 신원과 그의 유전자형을 연결하는 교리가 된다.

둘째,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이다. 여기에는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각 개인에 대한 고유 코드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며, 개인의 STR 부위 유전자형이 숫자코드로 입력되게 된다(표1).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는 범인의 인적사항이나 특정 유전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미제사건 데이터베이스이다. 강력 사건마다 실시하는 유전자감식에 의해 범인의 유전자형은

밝혀질 수 있다. 이 중 용의자가 없는 사건에 대한 범인의 유전자형을 입력 보관하게 된다. 물론 추후에 일치하는 진범을 찾는 경우라면 해당 데이터는 삭제될 수 있다.

강력범죄의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물은 감식기관에 보내져 유전자감식을 통해 범인의 유전자형을 밝혀지게 된다. 특정한 코드로 표기된 이 미제 사건은 유전자형과 함께 미제사건 데이터베이스로 온라인을 통해 보내지게 된다. 범죄자 및 미제사건 데이터베이스 담당자는 매 미제사건이 접수될 때마다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입력된 유전자형이 있는지를 검색하게 된다. 일치하는 범죄자를 찾은 경우는 인적사항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게 결과가 전달되어 주어진 코드를 의하여 범죄자의 인적사항을 밝혀지게 된다. 일치하는 범죄자가 없다면 새로운 미제사건으로 등록 입력되게 된다.

검체의 종류는 과거에는 혈액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구강채취물, 모발 등으로 간소화 되는 경향이 있다. 입력대상자의 인적사항은 인적사항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게, 수집된 검체는 감식기관으로 각각 보내어지게 된다. 감식기관에서는 유전자감식을 통해 얻은 입력대상자의 유전자형을 데이터베이스로 송부한다. 범죄자 및 미제사건 데이터베이스 담당자는 매 입력대상자의 유전자형이 접수될 때마다 미제사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검색, 일치하는 사건을 검색한다. 일치하는 사건이 있으면 이는 이 범죄자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를 해당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나. 외국의 사례

효율적인 유전자정보은행의 구축을 위하여는 이

중요하므로 외국의 사례를 간략히 검토하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유럽과 북미의 모든 국가는 2002년 현재 유전자정보은행을 시행 중이거나 준비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금명간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이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감식기술은 영국, 미국이 현재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둘 두 나라에 대해 살펴보겠다.

영국은 1995년 4월에 NDNAD(National DNA database)라 이름 붙여진 유전자정보은행을 세계 최초로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성폭력과 같은 제한된 범죄의 유죄확정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2002년 현재는 모든 'recordable offence'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유죄확정 이전 피의자들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2002년 1월 현재 150여 만명의 범죄자와 13만 여건의 미제사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 중이다. 검색을 통한 사건해결은 참으로 놀랍다. 1995년 4월부터 2002년 1월까지 17만 여건의 범인색출과 1만 3천여 건의 동일범 소행사건을 밝혀 내었다. 이것은 1 주당 1,300여 건의 일치 건수를 찾아내는 속도에 해당하며 매달 4만 명 정도가 새로이 입력되므로 이 속도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수사비용의 절감도 막대하다는 것을 영국 정부는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1998년 10월에 NDIS(National DNA Index System)라는 연방수준의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하였다.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미국은 네트워크를 통한 전형적인 계급구조의 제도를 이루고 있다. 모든 사건과 범죄자의 유전자형 입력은 LDIS(Local DNA Index System)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이 데이터들은 SDIS(State DNA Index System)라는 중간 단위의 데이터베이스를 거쳐 NDIS로 연결된다. 이 연결은 미국 FBI가 개발한

CODIS(Combined DNA Index System)라는 통합 소프트웨어에 의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계급구조를 지니는 이유 중 하나는 각 주마다 정보은행에 대한 법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영국에 비해 보수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쪽이라 모든 주에서 유죄가 확정된 자만을 입력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는 주별로 천차만별을 이룬다. 그러나 50개 주 모두에서 채택되고 있는 범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폭력범이다. 정보은행에 대하여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코네티컷, 델라웨어, 캔터키, 미시시피, 뉴햄프셔 5개 주는 성폭력범만을 입력대상으로 한다. 현재는 모든 주에서 입력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다. 미국은 2002년 4월 현재 90여 만명의 범죄자와 3만 여건의 미제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보관 중이다.

다. 입법의 선결과 입력대상자의 범위

정보은행을 실시하는 모든 국가는 이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입법은 선결과제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법률이 통과된 바 없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90년대 초반부터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기술적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 국민들의 공감대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법률안에 포함되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자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입력대상의 결정이라 하겠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입력대상의 결정은 범죄자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이며 피의자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 성폭력, 강도, 상해, 마약 등의 죄로 1년의 금고형 이상 유죄확정자를 입력대상으로 한다면 통계에 의하여 연간 약 일만여 명이 입력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범위를 더욱

축소하여 성폭력범 유죄확정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1,100여명 정도가 될 것이다. 말하자면 미니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입력대상을 성폭행범으로만 한정할 경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입력된자들의 범행을 예방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성폭행범의 검거율은 생각보다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재범자의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으로 검거된 재범자가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이종재범의 경우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은행의 효용이 극대화되려면 입력대상 범죄를 법률적 검토에 의해 점차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유죄확정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이라 하겠다.

이 밖에 효율적인 정보은행의 운영을 위해서는 감식기술과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사전 준비과정이 상당기간 필요하나 기술적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여기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그 기술수준은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는 이르렀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인가? 정부의 필요성 인식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법률제정이다.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 데이터베이스는 충분한 자료가 입력되었을 때 그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따라서 설립 초기보다는 시간을 거듭할수록 그 효과에 가속도가 붙기 마련이므로 지금부터 시작해도 많은 시일이 지난 다음에 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3. 유전자정보은행에 인권 등의 문제는 없는가
가. 이미 유죄가 확정된 자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잠재적 우범자 취급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나 “인권침해”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모든 성인에 대하여 지문자료를 관리하는 나라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하여도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유전자정보은행에 수록된 유전자형 자료나 지문은 연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보은행 제도를 도입하면 이들의 숨겨진 범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영원한 미제로 남을 수 있는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분명 사회정의의 실현에 공헌하는 점이다. 또 정보은행의 검색을 통해, 범인을 찾아낸다면 그 사건에 관련된 무고한 용의자들을 연행, 조사하는 것이 불필요해진다. 그렇다면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인권 문제에 매우 민감한 미국, 유럽 각국들이 앞다투어 유전자정보은행을 도입하는 목적은 어디에 기인하는가?

나. 입력자료는 개인의 질병에 대한 소인, 성격, 범죄성향 등과 관련된 자료가 아닌가?

‘DNA가 인간 생명현상의 설계도’라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사람들이 ‘DNA 검사’라는 단어에 대해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전자감식이 대상으로 하는 DNA 분석부위인 STR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보자.

DNA라는 단어와 유전자라는 말은 엄격히 얘기하면 다른 의미이다. 인간의 DNA는 30 억개에 달하는 염기사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개인의 각종 질병소인, 성격 등을 결정하는 부위는 유전자(gene)라고 불리운다. 인간 유전체 분석은 전체 인간 DNA 중 2-3% 만이 유전자를 이루는 부위이고 나머지 97-98%의 부분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아무런 유전정보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STR 부위는 바로 이 97-98%에 해당하는 부분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표1에서 보는 것처럼 각 개인의 유전자형은 숫자로 표시되는데 이와

1 대하여 지문자퇴이터를 생명과학자나 의사들이 입수한다
부분에 대하여도-그럴 가능성도 없지만-그 자체는 아무런
1만 유전자정보은 얘기해 주지 못한다. 유전자를 형성하지
문은 연적인지도TR 부위가 특정 질병이나 개인의 성향과
도입하면 이들과다고 확정적으로 밝힌 연구결과는 현재까
가능해 진다. 영한 건도 없다. 따라서 유전자정보은행에 수
을 해결한다는 것이터는 개인의 모든 것을 들추어내는 그런
하는 점이다. 또 기 정보가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분석을 위
아낸다면 그 새한 개인 검체나 쓰고 남은 DNA의 문제는
연행, 조사하는 ?

과 무관한 사람

아닌가? 인권 문제검체나 DNA는?

사람들이 앞다투어부터 얘기하면 잔여검체나 DNA가 의료기관
은 어디에 기인료협회사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전자분석

이하는 기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병에 대한 소인그들은 DNA를 가지고 자신들이 흥미있게
가 아닌가? 는 부분을 분석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설계도' 라는 기 검체나 DNA의 유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IA 검사' 라는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잔여검체나 DNA를

들추어내는 기베이스에 자료 수록 뒤 즉시 파기하는 것은
것이 사실이다? 정보은행을 실시하는 나라 중에 잔여 검

하는 DNA 분석DNA를 파기하는 나라들도 많다. 이 문제에
1 보자. 1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전산입력되어 보관

는 말은 엄격자료라 하더라도 유전자감식자체는 사람이
1 DNA는 30 일이므로 오류의 가능성은 있다 하겠다. 극

있는데 이 중 문 일이겠지만 분석이 잘못되는 경우나 자료
정하는 부위남의 실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

유전체 분석은라서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검색과정에
전자를 이루는온다면 이에 대한 유전자감식을 다시 한번

적어도 현재하는 것이 정보은행의 생명인 정확성을 확보
기 않다는 것을하나의 수단이 된다. 이 때 DNA를 폐기하였

7-98% 에 해:다시 한번 검체를 채취하는 번거로움도 생기
표1에서 보듯제로 범인의 신병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로 표시되는데검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잔여검체나 DNA의 보관을 고려하게 되는 또 하
나의 요인은 생명과학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
전한다는데 있다. 지금 현재 분석에 쓰이는 STR
관련 기술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한 감식 기술이
개발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어
떻게 될까. 기존의 자료를 새로운 기법의 자료로
대체하여야 하는데 이 때 DNA가 없다면 기존의
자료는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문제에 이르게 된
다. 따라서 잔여 검체나 DNA의 폐기 문제는 신중
하게 생각해야 한다. 다만 잔여 검체나 DNA를 일
정기간 보관한다면 법률에 명시하여 외부유출을
막는 제도적, 형벌적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유전자정보은행에 입력된 자료를 수사기관이
남용한다면**

자료가 남용될 가능성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인적사항 데이터베이스의 철저한 분리관리를 통
해 해결할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인적
사항 데이터베이스는 제한된 수사책임자 만이-그
것도 매우 한정된 숫자로-접근하도록 해야 하며
감식기관의 검색보고를 실제 개인과 연결시키는
작업은 이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법적 제도의 마련이 필
요한 것은 물론이다.

이상으로 유전자정보은행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
는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어느 제도가
든 먼저 시행한 사례가 시금석이 된다. 1995년에
세계최초로 정보은행을 도입한 영국의 경우, 그
효과는 기대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 정부
도 놀라워 하고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
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유전자정보은행
의 설립은 강력사건의 검거율을 높이고 범죄를 예
방하는 획기적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 정보은행의 문제점

김병수(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최근 검찰이 범죄자 유전자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 범죄자 유전자 정보은행의 추진 움직임이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 1994년에 관련 법안을 이미 만들었으며 최근까지 설립 주도권을 놓고 경찰과 마찰을 빚어 왔다. 2000년 겨울에는 경찰의 설립 시도가 인권 사회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번에 검찰이 들고 나온 명분은 사회적으로 쉽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성폭력 예방인데 관련 여성단체들조차 실효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전자 감식 기술, 국내의 유전자 감식기술 이용 현황, 유전자 정보은행의 설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유전자 감식기술

유전자 감식(DNA typing)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중 다형성(polymorphism)이 매우 심한 일부만을 중합효소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통해 증폭시킨 후 개인식별에 이용하는 기술이다. 즉 어떤 사람의 유전체에서 상대적으로 희귀한 위치들을 특성화 시켜 그 양상을 분리해 증명하는 것이다. 유전자 감식에 사용할 수 있는 DNA는 타액, 혈액, 정액, 땀, 머리카락, 피부 조직 등에서 추출할 수 있다. 예들 들면 범죄 현장에 남아 있는 담배꽂초, 머리카락, 정액 등에서 DNA를 추출 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범인이 사용했던 장갑, 흉기, 유리창에 찍힌 지문 등에서도 추출 할 수 있다.

유전자 감식은 친자 확인, 범인 검거, 사체 확인과 같은 신원확인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활용 영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기술을 주로 수사기관이나 군대, 이민국 등과 같은 국가기관이나 친자확인 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바이오 벤처들이 이용하고 있다.¹⁾

2. 국내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추진 현황

1) 경찰청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¹⁾ 국내에서의 인간 유전정보 이용 현황은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국내 인간유전정보 이용 실태 조사자료', 2001을 참조할 것.

1991년 경찰청은 산하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분석실을 설치하였고 2000년 7월까지 약 2만여 건의 시료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수행했다. 1996년까지 1,500건의 유전자 감식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²⁾ 그 후에도 꾸준히 감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9년도부터는 한국인 유전자 프로파일구축 연구 사업을 수행했으며, 2000년 12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하는 DNA는 현장증거물, 피해자, 용의자 등으로부터 취한 것을 의뢰 받은 것이며, 유전자 감식의 결과물은 문서로 된 형태로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편,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유전자 감식의 분석 결과는 한국인 집단의 DNA형 분포 및 빈도 등을 조사하여, 감정 결과 분석 시에 일치 확률을 확인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청은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으며 1995년에 <유전자자료관리및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현재 법안의 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관련 논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전자 정보 자료 파일의 관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이 담당하며 샘플(시료)을 채취하는 대상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로 규정하고, 구속 당시에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고 있다.³⁾

2)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유전자감식실

대검찰청은 1992년부터 유전자감식을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의 감식 실적에 대

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99년 10월부터 2000년 9월까지의 감식 실적은 56건의 사건에 190점의 감정물(DNA 샘플)을 감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간이 21건 72점, 살인이 13건 53점, 강도가 5건 9점, 간통이 4건 13점이고 변사·폭력·교통사고·마약사범 등을 포함한 기타 범죄가 13건 43점이다.⁴⁾ 검찰은 1992년부터 감식 결과는 물론이고 감식 후 남은 DNA도 냉동 보관하고 있다.

검찰청도 유전자정보은행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1994년에 <유전자정보은행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정보은행의 입력대상은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확정된 기결수'로 하고 있고, 대상죄목은 '강도, 강간, 살인, 절도 등 11가지'이다. 또한 유전자 정보은행의 자료는 범죄 수사 이외에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행정적 목적', '감식기법'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권한은 '사법경찰관이나 연구자'에게 각각 부여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1999년 총 2억 원을 투자해 한국형 유전자 감식기법과 정보은행 설립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이 과정에서 특허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과 관련된 예산을 계속 배정 받고 있다. 이런 정황들을 미뤄볼 때 이미 내부적으로 유전자 정보은행을 구축해 운영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2 유전자 정보은행의 문제점

1)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

유전자 정보은행을 도입하게 되면 특정 범죄자

²⁾ 유영찬, 장영민, "경찰과학수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유전자 은행의 설립과 활용을 중심으로", 치안논총, 1998제14집, 470쪽.

³⁾ 유영찬, 장영민, 위 논문, 515~519쪽.

⁴⁾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요구자료 X VI(2000년도 국정감사), 2000. 10.

에 대한 강제적 DNA 채취가 이루어진다.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 유전자 채취 시기, 영장 발부 여부와 같은 법률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다고 해서 이미 죄 값을 치른 범죄자들의 DNA를 국가가 강제로 채취해 보관하는 것은 범죄의 재발을 전제하는 것으로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률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비록 범죄자라 할 지라도 자기 '신체일부'를 강제적으로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전자는 사람마다 고유하고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매우 특별한 정보이다. 또한 유전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유전적 상태까지 포함하고 있어 가족 모두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유전자 정보은행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국가의 강제적 DNA 채취에 맞서 샘플 반환 소송이나 '양심적 DNA 거부자'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2) 보관된 DNA의 남용 가능성

유전자 은행을 찬성하는 일부 인사들은 유전자 감식에 사용하는 DNA부위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전정보와 상관이 없고, 저장된 정보는 식별을 위한 정보이기에 다른 정보를 얻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신원확인에 사용되는 DNA 부위와 질병정보 분석에 이용되는 DNA 부위가 서로 분리 돼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분석위치가 다를 뿐이다. 즉 마음만 먹으면 수거된 DNA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전자 감식 기술에 사용되는 표식자(marker)는 원래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적 목적에서 개발된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인

간게놈프로젝트 완성 후 개인의 염기다형성(SNP)에 대한 새로운 기능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료적, 상업적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전에는 의료상의 정보를 나타낸다고 생각되지 않았던 특정 표식자들이 나중에 의료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일부 주의 법의학 연구소들은 건강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표식자를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유전자 정보은행이 구축되고 범죄자로부터 혈액 또는 타액샘플을 채취하게 된다면 다량의 DNA를 확보할 수 있게된다. 만약 감식 후 DNA를 완전히 폐기한다면 유전정보의 남용 위험성을 줄어 들겠지만 일반적으로 차후의 검증 목적이나 신기술 적용을 위해 계속 보관하게 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남겨진 DNA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유전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은 신원 확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보관중인 DNA에 대한 법률적 통제도 가능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튜브에 담겨 있는 DNA의 속성상 남용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잔여 DNA의 남용 여부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감식결과의 오류 가능성

유전자 감식 결과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감식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분석에 사용한 방법, 실험 과정 및 해석, 검체의 특성 등에 의해서 차이가 날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의 표식자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인일 확률이 매우 높지만 어떤 경우에는 확률이 아주 낮거나 분석

이 불가능 할 때도 있다. 게다가 개인마다 밝혀지지 않은 유전적 특이성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현장에서 수거한 샘플의 상태가 안 좋거나 양이 적어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O. J 심슨 사건에서도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미국 검찰은 유전자 감식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내세웠고 변호인단은 이것의 오류 가능성을 문제삼아 결국 무죄 평결을 받은바 있다.

국내에서도 유전자 감식 결과의 오류로 인한 사건이 법정으로 비화된 적이 있다.⁵⁾ 또한 감식 결과를 판독하는데 있어 해석상의 편향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의학자들은 의뢰인(수사기관)의 목표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전문직업적 유인을 가지며 이런 유인들은 그들의 과학적 공공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미국의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는 범죄실험실에서 근무하는 법의학 기술자가 수년간 DNA기록들을 변조한 사건이 있었다. 주 대법원은 이 기술자가 증언한 130건의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9명이 무죄로 석방되었다. 따라서 유전자 감식 기술이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용의자들이 법정에서 기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 할 것이다.

4) 유전자 감시망의 사회적 확대

가. 한번 설립된 유전자 은행은 입력 대상이 계속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처음에는 사회적 정당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살인, 아동 성범죄 같은 흉악범에서 나중엔 사소한 절도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확대의 근거

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전자 정보은행의 속성상 입력 대상의 확대와 효율성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명분은 성범죄자 예방이지만 이들만 입력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효과를 볼 수 없다. 입력 대상의 확대 필요성은 검찰 범의학 관계자도 인정하고 있다.⁶⁾ 미국의 뉴욕주를 보더라도 처음엔 입력 대상 범죄가 21개였지만 1999년에는 비폭력 범죄를 포함해 107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DNA 채취도 이루어지고 있다.

나. 범죄자 유전자 은행의 개인식별 자료들은 다른 정보나 신원확인용 유전자 은행들과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가가 소유한 다양한 개인 정보들이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연동, 통합되는 것처럼 각종 신원확인용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미아 찾기, 이산가족 찾기, 군대)나 신상정보(주민등록, 지문 등)들과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법안도 정보은행을 신원확인용과 같은 행정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CODIS 시스템을 관리하는 FBI가 군대의 유전자 정보은행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덧붙여 국내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주민등록번호제와 지문날인제도를 전산화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감시체제를 갖춘 나라이다. 이런 전 국민적 식별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유전정보까지 국가가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⁵⁾ "유전자검사업체 검사착오로 가정파탄 40대에 배상하라" (동아일보, 2002.10.19)

⁶⁾ 이승환, "여성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전자 정보은행 신설제안", 여성부 토론회 자료집, 2002

다. 유전자 정보 은행의 설립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유전자 감식기술의 활용을 확대시킬 것이다. 유전자 감식은 표면적으로 특정 범죄자에 한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유전자 분석이 요구된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 현장에서 발견된 다양한 샘플, 용의자나 가족, 현장 주변 인물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장 증거물의 유전자 프로파일과 범인의 유전자 프로파일을 비교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의 유전자 채취는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반강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 2002년 3월 경남 마산에서 발생한 강간 살인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600여명의 용의자들에 대한 DNA 채취가 이루어 졌다고 한다.⁷⁾ 물론 아무런 법률적 기반 없이 시행된 것이다. 이런 사례는 외국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프랑스 작은 마을에서는 십대 소녀를 강간 살해한 범인을 잡기 위해 마을에 사는 15-35사이의 모든 남성들에게 DNA 샘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유전자 정보은행의 설립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단순히 효율적인 범인 검거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유전자 정보은행의 설립은 현재 준비되고 있는 각종 신원확인 정보은행의 설립과 유전자 감식기술의 확대를 촉진 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나 사적 기관에 의한 개인 유전정보의 수집 그리고 이로 인한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연결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유전

정보의 활용 정도에 비해 유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부족한 편이고 이에 따라 유전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법률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나 경찰의 일부 법과학자들에 의해서 논의가 주도되면서 기술적 우수성만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기관에 의한 범죄자 유전자 정보은행의 설립 여부는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⁷⁾ '6세 여아 성폭행 살인범 '콘돔정액'으로 9개월만에 검거' (굿데이 2003.1.5)

헌법합치적인 인사청문회 얼마든지 가능

인사권 침해 주장은 기록권 수호논리에 불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1.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한광옥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청와대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청와대의 주장은 검찰총장은 국회의 임명동의의 필요를 하는 공직자가 아니며 따라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뉘튼게나마 여당이 인사청문회 도입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환영할만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위헌주장은 법무부와 검찰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기록권 수호논리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참여연대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위헌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방식인 국회 인준절차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헌법 아래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대통령에 대한 임명권에 대한 제한 내지 침해의 문제만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고 국민의 알권리 실현 차원에서의 접근한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즉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인준을 위한 청문회'가 아닌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 청문회'로 가능하도록 하면 된다.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상 국회동의 대상여부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이원적으로 운영하되 국회동의 대상이 아닌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대한 재량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국회는 공직후보자의 소신과 자질 및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열고 그 의견을 국회의 의결로 인사권자에 전달하며, 대통령은 이를 참고 혹은 반영해 인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국회의 청문회 결과에 반하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추후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다. 이처럼 국회동의의 한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 국민 알권리의 실현을 위한 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써 위헌논란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이다.

4.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검찰총장 등의 임명에도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와 검찰이 이런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청원한 바 있으며, 과거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헌논란과 법률검토를 이유로 반대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이유는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실시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한다. 청와대는 좀 더 솔직해 지거나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편집시간 : 2002년01월22일 16:12

검찰개혁추진에 앞장서는 의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찬사를 보낸다

여야 지도부는 검찰개혁방안을 수용하고 시급히 입법과정에 나서야 할 것

1. 참여연대는 온국민의 숙원인 검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 여야 개혁파 의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찬사를 보낸다.

2. 보도에 따르면 2월 5일 여야 개혁파의원들 20여명은 '검찰개혁추진 의원모임'을 결성, '특별검사제 상설화'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검찰개혁을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여야 의원과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설치할 것을 여야 지도부에 제안했

다고 한다.

3. '검찰개혁추진 의원모임'이 밝힌 '검찰개혁 10대방안'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설치' 등은 그동안 참여연대가 주장했던 검찰개혁과제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내에서의 집중적인 논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어 이번에만말로 검찰의 환골탈태와 일대쇄신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4. 이제는 여야지도부가 화답할 때이다. 검

찰을 개혁하고 부패를 척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 특히 원내 다수인 야당의 역할과 책임은 크다고 할 것이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다가 검찰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들어가기 이전인 2월중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설치' '검찰청법 개정안 논의' 등 가사적인 조치들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편집시간 : 2002년02월05일 15:10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포기한 헌법재판소 결정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소송 각하 결정은 법조계의 기록권을 고착화시킬 우려

1. 헌법재판소는 어제(2/28)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시험 정원제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결정이유는 선발예정인원, 합격자 결정방식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법시험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본안판단을 회피해 온 경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헌재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관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이제 정원제로 인한 권리침해를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게 됐다.

2. 우선 각하결정의 이유인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헌재는 사법시험 정원제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법령 조항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항에 의거해 구체적 집행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나타나 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법시험의 합격정원을 구체적으로 결정하

는 것은 행정자치부 장관이기 때문에(※참고, 사법시험령 제3조) 이는 행정처분임으로 위헌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장관이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접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법해석이다.

3.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소송은 참여연대가 지난 99년 12월 제기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인 사법시험은 그 성격상 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제로 운용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재판청구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헌재는 이번 각하 결정을 내리기까지 무려 2년 3개월의 기간을 소요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령이던 사법시험령은 정원제의 골격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사법시험법으로 바뀌었다. 헌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처럼 오랜 시간을 끌어온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이번 결정이 법조계의 기록권을 유지하기 위한

헌재의 교육정책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4.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심판청구는 법조인 선발 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해 궁극적으로 법조인 수를 대폭적으로 증원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초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부 전문직종에 시행되고 있는 정원제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말았다. 당분간 이들 업종의 반시장적 행태는 고착화 될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은 또 다시 그 불편과 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조문

사법시험령 제3조(선발예정인원)

① 선발예정인원은 매시험 시행시에 행정자치부장관이 법무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그 수를 일정범위의 수로 할 수 있다.

편집시간 : 2002년03월02일 13:41

김홍업 및 야태재단 관련 의혹, 특검으로 마무리해야

차 특검 통해 특검제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1.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차 특검팀의 수사성과는 의혹만을 확대재생산했던 검찰수사에 비해 괄목할만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관계로비 의혹은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고 아울러 검찰의 비호의혹과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수사 역시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특검법의 수사기간과 수사대상의 벽에 부딪쳐 김성환씨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관리 및 야태재단 관련 의혹, 이수동씨의 국정·이권개입 의혹도 수사의 단서만을 남겨놓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의 가장 주목할만한 성과는 축소은폐수사로 얼룩진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확인시켜 주고 동시에 특검제의 효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기를 마련

했다는 점이다.

2. 특검팀은 이용호의 추가 횡령사건, 신승환, 이형택의 알선수재, 김봉호 전의원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사실을 규명한 것을 비롯하여 수백억원이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리고 김성환, 김홍업, 야태재단 등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권력형 비리사건

의 가능성까지 보여주었다. 차정일 특검팀의 이러한 성과는 이용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존 수사결과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 수사성과의 양과 질에서는 물론이고 이러한 결과를 내게 한 수사주체의 태도 차이 즉 원칙적인 수사태도와 시각과 관점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 차 특검팀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역시 이같은 진실규명의지와 수사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두명의 특검보를 두는 등 과거의 특검에 비해 권한이 한층 강화된 점도 그 이유일 것이다.

3. 반면에 검찰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이 맞차례 기각된 것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수사를 하지 않을 빌미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 어찌됐든 당장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상당부분은

다시 검찰이 수사를 떠맡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체제로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리라고 기대하는 건 난망하다. 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을 못 믿겠다는 국민적 정서가 겨우만은 아니었음이 입증되었다는 점도 그렇다. 이런 우려때문인지 검찰은 이명재 총장이 직접 나서 자신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이같은 다짐과 약속은 매년 반복되는 구두선에 불과했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4. 이용호 사건 특검수사의 남은 과제는 김성환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관리와 아태재단, 김홍업씨와의 관계 등 권력 중심부를 건드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차정일 특검팀이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을 때의 '이용호 사건'보다 더욱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 여론

은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특검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마무리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같은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아직 규명되지 않은 의혹과 추가로 드러난 비리 의혹은 특검제를 도입해 대미를 장식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번 특검팀을 통해 특검제의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런 특검효과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차체에 정치권은 특검의 수사대상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특검제를 일반법으로 도입해 이 사건을 수사토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하지만 신속한 진실규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특검팀 구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시간 : 2002년03월25일 18:16

법관인사 독립이 진정한 사법부 독립

문홍수 판사의 헌법소원을 계기로 법관인사 독립성 확보 위한 제도개선 노력해야

1. 문홍수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판사들의 고등부장 승진과 근무평가, 판사 제임명제도 및 현행 법관보수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임기제와 계급제로 대표되는 현행 법관인사제도가 사법부 독립을 가로막는 요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여연대는 발탁 승진을 골자로 한 현행 법관 인사제도가 사법부 독립과 민주화를 가로막는 위헌적 제도라는 문홍수 판사의 지적에 공감하며, 차체에 법원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법관인사제도의 개혁에 나서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2. 사실상 임기제로 운용되고 있는 법관제 임용제도는 파면제도와 유사한 만큼 법률상 파면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없다면 당연

히 재임용되는 합리적인 법관재임용제도로 운용해야 한다. 법관재임용제도가 법관의 보수화를 막고 자질미달의 법관에 대한 통제를 위한다는 취지와 달리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협해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사례가 있어왔다. 법원의 보수체질을 비판한 방희선 판사가 재임명에서 탈락했던 데에서 보듯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양심의 외침을 틀어막는 수단으로 이용된 부정적인 사례가 그것이다.

3. 따라서 재임용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엄격한 요건에 의한 파면제도가 있는데, 굳이 재임용제도를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다만 법관의 임기가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현실적인 방안으로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관의 신분보장과 당연재임용제도의 문제점을 조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임용과정에 법원내부인사와 외부인사의 참여를 보장한 독립적인 법관인사위원회를 두고 파면절차에 준하여 당사자에게 소명기회 및 불복절차를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현재 법원의 조직은 예전의 직급제는 폐지되고 단순한 보직제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운영상황은 사실상의 법관계급제가 관철되고 있으며 이는 법관들이 재판에 있어 인사권자의 눈치를 살피게 되어 소신판결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지방법원 배석판사부터 대법원장에 이르기까지 약 10여단계의 위계체제로 이뤄져 사실상 직급제가 관철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법원 부장판사까지는 연공서열로 승진을 하고 고등법원 부장판

사의 경우에는 발탁승진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발탁승진의 경우 여기에서 탈락한 경우 대부분 법복을 벗고 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갖추게 되는 4,50대에 상당수의 법관들이 사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아울러 이렇게 퇴직하는 법관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전관예우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5. 법원은 재판을 담당하는 독립관청으로 직급의 존재는 불필요하다. 따라서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고 순환보직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장판사로 승진하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순환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는 지방법원 내지 고등법원의 법원장까

지를 순환보직 대상에 포함하면 고등법원장 - 지방법원장 - 고등부장 - 지방부장의 엄격한 계급체계에서 오는 폐해를 줄이고 일정한 기수가 고등부장으로 승진하면 나머지 탈락한 지방부장들이 전원 옷을 벗고 변호사개업을 하여 전관예우를 받는 관행도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6. 헌법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게 되어 있음에도 임용, 재임용, 승진 등에서 대법원장 및 각급 법원장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현재의 법원인사제도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될 수 없다. 즉 이제 사법부의 독립은 과거 독재시절의 정치권 내지 독재정권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과제를 벗어나서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 즉 법관인

사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함으로써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인 법관 인사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해 이러한 법관의 임용, 재임용, 승진, 보직, 나아가서는 대법관 추천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며 다 나아가 법관인사위원회는 대법원장으로부터도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옳다. 검찰인사위원회보다 고도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사의 잘못된 처분은 재판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지만, 법관의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이다.

편집시간 : 2002년04월08일 14:37

검찰고위간부의 정치적 행태에 경중을 올려야 김대웅씨 수사 및 사법처리 결과 주목

1.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가 이용호 사건 수사기밀을 알려준 검찰 고위간부가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김대웅 현 광주고검장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간부의 수사기밀누출 사실은 이미 특검팀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수사주체인 검찰이 수사사실을 사전에 알려 혐의자의 도피를 도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무상 기밀누설이라는 개인적 범법행위를 넘어서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검찰 전체의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지금껏 검찰수사의 관심사는 수사기밀을 누출한 당사자가 누구였느냐는 것이었다. 결국 이수동씨의 진술을 통해 김대웅 검사장이 드러났고, 그동안 '설마'라는 의식이 구체적인 혐의로 확정된 것이다. 김 검사장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6번이나 되는 통화횟수와 시점, 출국시점과

의 관계, 평소의 친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같은 해명이 그동안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들의 상투적인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3.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검찰고위간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충격과 분노는 그동안 검찰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김대웅 검사장이 당시 정치인 수사 등 주요 정치사건의 수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검찰요직중의 요직인 서울지검장이었다는 점이다. 일반 검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범죄수사에 주력할 때 검찰고위간부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수사사실을 유출함으로써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했다는 혐의를 일반 검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4. 일부 검찰간부의 정치적 태도는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이는 검찰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증폭되어 왔다. 이번 사건은 이같은 정치검찰의 극단적인 행태가 수사기밀누출이라는 불법행위로까지 이어져 왔음을 확인 시켜주는 것으로, 당연하게도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혀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것만이 검찰의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이용호 게이트 초기 수사진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이용호씨를 무혐의 처리토록 한 검찰간부들이 자진사퇴 및 징계 정도의 미온적인 처벌로 유아무야 처리되어 왔음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실규명 노력과 사법처리 의지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편집시간 : 2002년04월10일 15:14

권노갑씨 5000만원 본인가?

밝혀야 할 의혹, 밝혀진 의혹보다 훨씬 많아

1. 검찰이 권노갑 민주당 전고문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 내용은 권 전고문이 금감원 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김은성 전국정원 차장을 통해 진승현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 전고문의 불법행위가 비단 5,000만원의 금품수수에 그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편에선 검찰이 권노갑씨의 범죄행위 중 비교적 가벼운 혐의만을 사법처리함으로써 일종의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권 전고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의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검찰도 그 점을 직시해야 한다.

2. 권 전고문은 사실상 여권의 정치자금 관리를 총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그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지원했음이 드러났다. 그 뿐만 아니라 각종 게이트 및 권력형비리사건 때마다 그의 이름이 직간접적으로 거론되어왔다. 여기에 어제오늘 잇따라 제기되는 의혹은 권 전고문을 둘러싼 비리가 비단 개

인적 비리에 그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이용해 비리 은폐가 가능할 수 있었던 근저에는 정보기관 및 사정기관의 묵인 혹은 조직적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면에서 권 전고문에 대한 의혹은 밝혀진 것보다 밝혀야 할 것들이 훨씬 많아 보인다. 권 전고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지켜볼 것이다.

편집시간 : 2002년05월03일 17:41

검찰은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부터 밝혀야 청와대와 검찰의 사건은 왜 의혹을 드러낸 최규선의 녹취록

1. 최규선씨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녹취록의 내용은 충격과 함께 참담함을 안겨준다. 한 나라의 국가 운영이 법과 원칙이 아닌 뒷골목의 질서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듯 해서다. 아직까지 진실과 거짓의 경계선은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녹취록의 내용이 하나둘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의혹과 추측의 밑그림을 그리고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는 독해법으로 부족함이 없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책임은 현재까지 검찰의 몫이다. 하지만 녹취록 중 검찰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때 과연 이 사건수사를 검찰이 떠맡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바로 범죄행위를 감추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검찰과 청와대의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 때문이다.

2. 녹취록은 '홍길씨에 관한 최규선의 진술을 두려워해 검찰과 청와대가 최규선씨 소환에 대해 상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규선이 홍길씨에게 준 3억원과 관

련해서도 "수표주적을 피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므로 (검찰)소환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규선씨의 밀항을 위해 검찰이 시간을 벌여 주고 있다'는 대목도 있다. 이는 검찰이 청와대 혹은 여타의 국가기관과 이 사건을 협의하고 수사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고 범인을 도피시키려 했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한다. 아울러 그 시점이 현 이명재 총장체제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수사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명재 총장은 무엇보다 우선해서 이같은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3. 98년 마이클 잭슨의 공연과 관련한 수사에서 검찰이 최규선씨를 무혐의 처리한 것도 문제투성이다. 이 사건은 경찰이 횡령 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고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최규선씨는 무리하게 자신을 사법처리하려 했으나 공연이 이뤄짐으로써 결국 무

혐의 처리되었다고 주장했다. 최규선씨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정무수석과 국정원장이 구속수사를 지시하고, 홍길씨를 통해 구명요청을 했으며, 법무비서관의 지시로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과정은 검찰의 수사와 사법처리가 법과 원칙보다는 지시와 압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최규선씨 수사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된 경위와 그 과정에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수사를 지시하거나 혹은 무혐의 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진상을 밝혀야 한다.

4. 최규선씨는 녹취록에서 "이만영 정무기획비서관과 최성규, 2명의 국정원 직원이 모여 수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해 최규선을 밀항시킬 계획을 짰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단 최규선씨 뿐만 아니라 최성규씨의 해외출국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혹의 실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야당은 최성규씨의 해외 출국에 대해 국가기관의

개입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녹취록의 내용은 최성규씨가 왜 출국했고, 이 같은 해외도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여 준다. 홍걸씨에게 쏟아지고 있는 각종 의혹의 진원지인 최규선씨와 최성규씨를 빼돌리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청, 국정원이 밀항을 기획하고 검찰은 그때까지 출국금지 요청을 늦췄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처럼 검찰이 의도적으로 신병확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의 파장을 줄이려 했다는 의혹이 검찰의 그동안의 해명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들린다.

5. 녹취록을 통해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범인을 도피시킴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강해지고 있다. 최근에 쏟아지고 있는 각종비리가 타락한 일부의 개인 범죄가 아니라 정권차원에서 저질러진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만큼 비리와 부패를 감추기 위한 국가기관의 개입과 축소은폐 시도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검찰 역시 여러 정황

으로 보아 이같은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은 모든 의혹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수사의 주체라는 점에서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최근 사건들의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와 이를 통한 신뢰회복이라는 검찰의 지상과제와 특검제 실시라는 양날의 칼위에 검찰은 위태롭게 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편집시간 : 2002년05월08일 14:11

검찰은 김홍업씨를 조속히 소환, 사법처리해야 늦춰지는 소환, 정치적 고려한다는 우려만 키울 뿐

1. 현재까지 검찰 수사에 의해 확인된 김홍업씨 관련 자금거래내역만 해도 60억원이 상에 달한다. 그동안 검찰은 김홍업씨가 김성환씨가 관리한 차명계좌에 출처불명의 18억원을 입금한 사실, 김성환씨로부터 15억원 수수, 아태재단 직원과 김성환씨를 통한 28억원의 돈세탁 사실을 밝혀냈다. 그 외에도 김홍업씨의 친구인 유진걸씨가 차명계좌로 관리한 32억원의 비자금 역시 김홍업씨의 돈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2. 그럼에도 김홍업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검찰은 '이권개입의 대가 여부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입장에 대해 일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한편으로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김홍업씨의 소환 지연과 관련, 검찰이 대통령의 두 아들을 연이어 사법처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다는 설에서부터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설, 지방선거와 월드컵 분위기를 타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등등의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3. 이러한 추측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유일한 방도는 검찰이 조속한 시일내에 김홍업씨를 소환수사하고 사법처리하는 길뿐이다. 김홍업씨가 28억원을 돈세탁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조세포탈죄의 적용이 가능하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1997년에도 김현철씨의 돈세탁과 관련, 조세포탈죄를 적용한 바

있다. 따라서 김홍업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밝혀진 조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소환 구속시키고, 추가 수사를 통해 불법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이권청탁의 대가성 여부를 밝혀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4. 지금 온 국민은 검찰이 대통령 아들이 개입된 권력형비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김홍업씨의 사법처리 여부가 검찰의 실추된 권위와 국민적 불신을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정치적 고려를 한다면 더 이상 검찰이 설 땅은 없다.

편집시간 : 2002년05월22일 14:40

/ 임미욱 rimick@pspd.org

월드컵에는 일반 형사사범도 소환 안하냐? 대통령 아들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즉시 소환 사법처리하라

1. 김홍업씨에 대한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지켜보면서 설마 설마했더니, 드디어 대검중수부가 김홍업씨의 소환과 사법처리를 월드컵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검찰은 그 이유를 "홍업씨를 소환

사법처리할 뚜렷한 범죄혐의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며, 월드컵 때 홍업씨 문제가 불거지면 국민충제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2.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특검이후 2달 여간 진행된 김홍업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검찰은 이미 60억원이상의 자금거래내역과 28억원의 돈세탁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조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소환 구속시키고

추가 수사를 통해 이권개입 등의 혐의를 밝혀내면 될 일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2일 논평을 통해 이를 주장한 바 있다. 두 번째 이유와 관련해서는, 월드컵과 홍업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검찰이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없이 사정중추기관으로서 수사의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것이다. 오히려 월드컵을 고려한다는 명분하에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가중될 뿐이다. 벌써부터 홍업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 지연을 둘러싸고 청와대 압박설 등을 비롯한 각종 우려가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권의 정쟁중단 선언을 틈타 홍업씨에 대한 소환연기를 발표한 것은 그동안의 우려가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불과 얼마 전 권력형비리에 대한 불철저한 수사로 인해 결국 특검이 도입되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검찰은 홍업씨 문제뿐만 아니라 수사기밀 누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웅고검장에 대해서도 소환조사한지 한달이 되었건만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검찰의 행태는 그동안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이 주장해 온 특검제 상설화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 권력형비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땅에 떨어진 검찰의 위신을 회복해야 할 검찰이 또다시 본분을 망각하고 여하한 수사외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권력형비리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검찰이 선택할 일이다. 홍업씨 소환연기 방침을 철회하고 조속히 소환하여 사법처리 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사정기관으로서 무력함을 선언하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찬성하고 나서든가.

편집시간 : 2002년05월27일 18:16

검찰의 철저 수사인지, 어디로 갔나 권력형비리에 대한 임정 수사와 사법처리를 다시금 촉구한다

권력형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최근 권력형비리 연루자들에게 대한 검찰의 수사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과연 검찰이 엄정히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3월초 차정일 특검팀이 이용호계이트 수사를 통해 김홍업씨의 불법자금 의혹을 제기한 지 2개월이 넘어섰고,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서 60억원이상의 자금거래내역과 28억원의 지능적인 돈세탁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김홍업씨에 대한 소환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검찰은 김홍업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권개입 혐의로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소환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혐의자로 하여금 말뚝치기,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번 비리 사건 관련자인 김병호 아태재단 전 행정실장이나 홍업씨의 대학후배 이모씨가 잠적, 신병확보에 실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압력에 밀려 철회하기는

했지만 검찰이 김홍업씨의 월드컵 이후 소환 입장을 밝힌 것이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압박설, 지방선거 고려설 등으로 인해 결국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 역시 비등한 상황이다. 또한 이미 불법행위가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일반 형사사범들에 대한 처리와 비교해서도 형평성에서 어긋난 것이다.

검찰의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태도는 권노갑씨에 대한 사법처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5월초 진승현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권노갑씨를 구속하면서 "자금의 출처를 비롯해 권노갑씨의 정치자금 전반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결국 5월 22일 권노갑씨를 5000만원의 수수만으로 알선수재를 적용 기소하였다. 권노갑씨는 '정거장'으로 표현될 정도로 사실상 여권의 정치자금 관리를 총괄해 왔으며,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지원했음이 이미 드러났고, 최태곤씨를 통해 진승현씨 돈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그의 측근

인 김태량씨가 자서전을 통해 권노갑씨가 총선출마자들에게 자금지원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권노갑씨를 5000만원의 금품수수만으로 기소한 것은 검찰이 권노갑씨의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서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할뿐더러, 권노갑씨 구속이 오히려 권노갑씨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동안의 의혹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어디 그 뿐인가. 수사기밀 누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웅고검장에 대해서도 지난 4월 9일 혐의 발표, 4월 25일 소환 이후 한 달 이상이 지났건만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검찰이 재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이번 권력형비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검찰의 존재이유를 가늠하는

시금석이자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마지막 기회이다. 만약 검찰이 김홍업씨와 관련하여 물증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지부진한다면 그것은 권력형비리 수사에 대한 검찰의 무능력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수사외적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이 존재할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더 이상 늦기 전에 검찰은 김홍업씨를 소환 사법처리해야 한다. 그 이후 추가수사를 통해 이권개입 등의 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검찰이 취해야 할 올바른 수사방향이다.

권도갑씨에 대해서도 구속 당시 국민앞에 밝혔던 것처럼 정치자금 전반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수사하고 추가기소해야 할 것이며, 김대웅고검장 역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2002년 5월 30일

참여연대

편집시간: 2002년05월30일 14:19

검찰의 날개 없는 추락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검찰권 독립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실현하라

1. 지난 6일,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 고검장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전직 검찰총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1992년 김기춘 씨를 시작으로 벌써 네 번째이니, 검찰로서는 다시 없는 치욕을 또다시 겪게 된 것이다.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된 기밀누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대웅 광주고검장,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와 관련하여 소환 조사될 예정인 김진관 현 제주지검장과 당시 수사 관계자들, 김홍업 씨 측근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해당 지검의 부장 검사들, 그리고 여러 대형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검찰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분노와 함께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

2. 특히,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앞장

서 주장하고 보호해야 할 검찰총수가 직권을 이용하여 검찰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다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현실은, 그 동안 각종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청와대 혹은 여타의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수사 내용에 개입하고, 수사일정을 조정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비난을 받아온 일부 정치검찰들의 행태를 다시금 확인케 하는 사건이며,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검찰 간부들의 도덕성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3.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독립성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검찰의 독립적 수사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한 수사의지만을 가지고 아들 사건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일선 검사들의

고충 토로에 대해 검찰 수뇌부는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청산하고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새롭게 천명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을 강하게 실천해나가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의결기구화, 검사동일채원칙 폐지 등을 이루어야 하고, 그 외 검찰권 독립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법,제도 개선을 통해 검찰중립화를 위한 발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것만이 검찰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편집시간: 2002년07월09일 10:32

대통령의 아들 사랑은 모든 법적 가치에 우선하는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라

1.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대통령 둘째 아들 김홍업 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또다시 시끄럽다. 청와대 한 관계자가 송정호 법무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구했고, 송 장관은 일부 간부들과 비공식 회의까지 열어 이 같은 청와대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대응 논리까지 만들어야 했다고 한다. 권력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얼마나 거센 입김에 휘둘러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청와대 쪽에서는 이같은 압력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개각을 앞둔 현 시점에서 김홍업 씨에 대한 '선처 압력설'과 '송 장관 경

질설'이 맞물리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고, 청와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더욱 증폭되고 있다.

2. 정치적 사건 처리에 있어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고질적인 '외압'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다. 특히 "검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흥업씨 사법처리가 불구속 기소선에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종용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증언은, 검찰청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3.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검찰청법 개정'을 요구한다. 정치권의 외압 도구로 이용되어온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검찰청법 제8조)은 물론, 검사동일체원칙(동법 제7조)에 따른 상명하복조항과 직무승계이전권도 검찰의 독립적 수사권 확보를 위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국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문제가 되어온 검찰청법

의 조항들을 개정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청와대 역사 이번 사건의 의미를 '통상적 업무협조' 정도로 축소하는 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이상 이러한 사건들을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음을 직시하고, 검찰권 독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 문책해야 할 것이다.

편집시간 : 2002년 07월 10일 16:04

부패척결 5대 개혁법안 입법화 정치권과 국회는 즉각 착수하라!

온 국민이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는 동안 대통령의 두 아들 구속,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고검장의 부패사건연루 기소, 전·현직 국정원장의 떡값제공 등 각종 부패사건이 속속 그 실체를 드러냈다.

국민들은 권력형 부정부리에 대한 분노를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이에 각 정당은 앞다투어 정치개혁과 부패청산을 위한 제도의 입법화를 약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특위가 반부패대책을 내놓는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부패청산 특별입법의 연내처리를 약속하였고, 한나라당 역시 서청원 대표가 국회대표연설을 통해 부패청산을 위한 10대입법을 주장하며 국회에 '정치혁신특별위원회'를 가동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양당의 부패척결 주장이 구체적인 실천보다는 눈앞에 다가온 8·8 보궐선거와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정략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부패척결을 위한 개혁법안은 이미 수년 동안의 논쟁을 거쳐 일정 합의원만큼 정치권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한다면 당장 결실

을 거둘 수 있음에도, 오로지 상대방을 공격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개혁법안의 입법화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원구성도 못한 채 40여일을 허송세할 것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국민들의 부패척결에 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누구보다도 국회가 앞장서서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더군다나 이미 시민단체들이 부패청산을 위한 각종 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고, 그 중 일부는 의원발의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는 아직까지 국민들 앞에 최소한의 논의일정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 참여연대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5대 개혁법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원의 25%에 불과한 65명만이 회신을 보내온 것으로 본다면 차라리 무관심한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없다. 대선이 있는 해에 정거국회가 제 기능을 못해온 전례를

생각한다면, 지금 정치권과 국회가 논의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개혁법안의 연내입법은 불가능하다. 지금은 화려한 공약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실천이 뒤따라지 않는 공약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경험하였다. 현재까지 정치권이 국민앞에 내놓은 개혁법안만으로도 충분하다. 정치권과 국회가 연내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국민앞에 내놓고, 진정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진지한 자세로 만나 협의하면 될 일이다.

우리는 정치권과 국회가 당리당략에 앞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에 보여질 국민들의 분노와 힘을 먼저 생각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연내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7월 29일 참여연대

한나라당은 검찰의 사건배당까지 관여하나

1. 오늘,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 이명재 검찰총장에게 병역비리-은폐대책회의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가 아니라 대검에서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에 배당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검찰의 사건배당까지 관여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

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검찰총장을 찾아가 사건을 담당할 부서까지 좌지우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검찰수사에 대한 또다른 정치적 개입이며, 자신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해 온 것과도 상충된다. 더군다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야당에 불리한 편파수사를 진행한다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검

찰의 사건배당까지 관여해서는 안될 일이다.

3.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원한다면 당리당락에 따라 검찰 수사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 개정과 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법 제정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제도를 입법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편집시간 : 2002년08월01일 16:08

현직 판사의 "대통령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 지지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1. 8.15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지법의 정진경 판사를 비롯한 현직판사들이 "연례 행사 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직판사들의 이러한 입장 표명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 기회에 중립적인 사면심사위원회 도입 등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해 비판을 해왔다. 본래 취지를 생각한다면, 사면은 시대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과거판결에 대해 사회정의나 국민통합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권이 정치적 고

려에 의해 정략적으로 행해왔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8차례에 걸쳐 사면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화합이란 미명하에 김현철씨를 비롯해 권력형비리 사범과 선거사범 등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면권이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고유권한인긴 하지만, 이 처럼 사면이 아무런 법적 제한이나 기준 없이 대통령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법감정을 혼란시킴으로써 법치주의를 뒤엎는 것일 수밖에 없다.

3. 원칙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되어야 사면권 행사의 대전제인 '국민화합'도 가능하다. 따라서 차체에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현직판사들이 지적한 대로 온갖 비리를 저질러 온 권력형비리사범이나 선거사범 등을 정권의 편의에 따라 사면해서는 안될 것이며, 사면의 본래 취지인 국민화합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정치적 고려에 의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온 사면심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이나 사면법 개정 등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사전에 검증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편집시간 : 2002년08월09일 16:42

형사피의자 인권보장은 아직도 멀었다

서울지검 간부들에 대한 임중 훈책 있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장치 재정비 시급

1.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검찰청 검찰부는 지난 25일 밤 살인사건 연루 혐의로 긴급체포된 형사피의자 조모씨를 구타하여

사망케 한 혐의로 파견 경찰관을 구속하였고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나 최소한 조사를 담당한 수사관들이 형사피의자 인 조씨를 구타했다는 사실관계가 대검

감찰부의 조사와 본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2.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형사피의자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사법의 중추적인 이념에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 과 '적법절차가 있으나 금번의 사고를 통해서 본 우리의 수사현실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적법절차는 철저히 무시된 것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혀진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면,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행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피의자를 상대로 해서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보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정황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전히 밤샘수사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자정을 지나 새벽까지 잠을 재우지 않으며 수사를 진행시키는 반인권적인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검찰내부에서도 밤샘수사를 지양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서도 이러한 일을 버젓이 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4. 참여연대는 그동안 형사사법과정에서의 인권보장과 수사의 적정성, 공정성을 위해
 ▶수사관행의 개선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보장 및 실질화 ▶검사의 처분에 대한 검찰심사회의 도입 및 재정신청권의 확대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금번의 사고는 밤샘수사와 자백을 강요

하는 구태의연한 수사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문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검찰조직은 형사피의자 내지 피고인을 수사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 인권보장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임무를 해태한 서울지검 수뇌부와 담당검사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하리라 본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을 면밀히 살펴 필 것이며 모두가 수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되는지 주시할 것이다.

편집시간 : 2002년10월30일 23:06

장관, 총장교체로 끝낼 일이 아니다

지휘계통에 따른 임중한 문책 및 가시적인 재발방지대책 내놓아야

서울지검 조사실에서 발생한 피의자사망사건으로 인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급기야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많은 학자들과 시민단체가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했음에도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결과가 결국 피의자를 사망케 한 것으로 귀결되었으니 검찰이 급해서 최고 책임자들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청사내에서 피의자를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검찰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일반시민 모두가 잠재적인 피의자일 수 있으며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죄질의 경중을 묻지 아니하고 누구도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리에 비추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올바른 법의 적용과 집행은 철칙으로 여기는 검찰에서 발생한 구타사망사건은 검찰

의 존립근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상의 요구이며 가장 기본적인 형사사법 체계상의 기본원리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 본연의 임무를 한저히 해태한 것이며, 검찰부와 국립수사과 학연구소의 감정을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된 것이어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대검 검찰부는 주임검사의 위법사실을 이미 확인하여 일반 형사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며, 서울지검장은 사건 발생 후 이미 사실상의 사의를 표명하는 등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그러나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휘라인에 있는 상급자 중 일부는 사건발생 직후 문책성 전보되었고 지검장도 같은 이유로 전보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경험상 위법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검사징계법에 의해 솜방망이 문책을 한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형사사법권의 공정한 적용과

집행은 바로 검찰조직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공평성 시비는 상당부분 검찰이 져야 하는 몫이므로 철저한 수사하여 문책해야 할 것이다. 담당 주임검사의 사법처리는 물론이고 수사지휘계통상 책임을 질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상응하는 합리적인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면피성 전보로 해결될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해 둔다.

사건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심히 안타깝고 서글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인권보장을 외치고 검찰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인권보호를 직접 담당해야 하는 검찰 관계자의 입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재발을 방지하겠다'라는 고문수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언급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 대신, 이제 겨우 안정을 되찾아 가는 검찰조직이 다시 한번 출렁이게 되었다거나 사퇴의사를 밝힌 사람의 인품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후속인사의 폭과 범위가 주된 관심사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을 비롯한 모든 국가조직은 일반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근본적인 논의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안은 전혀 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고 오직 '조직을 위한 조직'이 우선적인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여진다.

국민의 검찰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그나마 성실하고 공정하게 일했을 많은 평검사들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려 버렸으며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이미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검찰자신이 인권침해적인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게 되었다. 검찰은 스스로 혁신하려는 행동을 직접 보여주어야 할 때다.

바라건대, 검찰은 인권의식제고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전환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와 더불어 참여연대와 형사법 학자들의 대다수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단 사건을 해결해야 능력을 인정받는 검찰내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 수사기관의 자백 편중수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원도 자백에 의해 얻어낸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 신중하고 엄격해야 할 것이다. 한편 ▶ 검찰내부의 각종 지침·예규

등이 상위법령에 우선해서 수사의 교본이 되고 있는 현재의 모순된 구조도 개선되어야 한다.

어떠한 국가조직도 기본적인 인권을 토대로 하지 않고 자기목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특히 검찰조직은 가장 인권을 침해하기 쉬운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이를 담보할 제반의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검찰의 위상이 되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과감한 자기 개혁과 그것을 위한 각고의 노력 없이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다.

편집시간 : 2002년11월05일 17:49

법무장관 · 총장 임명 부적절

재산등록 누락, 억값 수수, 게이트 · 이철규 사건 수사 미진 등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심상명 변호사, 검찰 총장으로는 김각영 법무부 차관이 각각 임명되었다. 청와대측은 검찰사상 유례 없었던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을 수습하고 다가올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무리없는 인물을 낙점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법무장관 검찰총장 인사는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의 결과로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임한 후속인사로서, 피의자 인권 보장은 물론 지난 수년간 제기되어온 해묵은 검찰 개혁의 과제를 해결할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할 인물이 임명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서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관철해 나갈 개혁적 소신과 추진력, 도덕성을 구비한 인물인가 하는 점이 가장 주된 기준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점에서 심상명 장관 임명 및 김각영 검찰총장 지명은 이러한 도덕적 개혁적 기준을 충족할만한 인사라 할 수 없다.

우선, 심상명 법무장관의 재산공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심상명 법무장관은 전주지검장으로 재직중이던 1993년에 4억 4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부친 명의 재산 5천2백여만원도 역시 신고는 했으나 "실제로는 나의 재산이 될 수 없는 허수"라는 석연치 않은 주장을 하였으며, 1차 신고 후 누락된 재산에 대한 추가신고분에 대해서 '부친이 임야를 구입하면서 형과 자신의 명의로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뿐'이라는 해명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제도의 초기시행과정에서 오는 이해의 부족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고위 공직자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들이다.

둘째, 김각영 총장내정자의 도덕성과 검찰 개혁추진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김각영 총장내정자는 서울지검장 재직 중 정현준·진순헌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하여 좌천성 전

보를 당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지난 85년 총무지청장 재직시절 검찰이 구속한 공무원의 상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문책인사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렴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검찰조직에서 이러한 인사가 총수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우기 검찰개혁을 앞장 서 추진해나갈 인물로서는 심각한 결함이라 판단된다.

셋째, 심 장관과 김 지명자의 검증을 위해서는 이철규씨 의문사에 관련된 수사미진에 관한 의혹이 해명되어야 한다.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이철규 씨가 심한 폭행을 당한 후 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결과가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심상명 장관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1989년에 당시 조선대 교지 편집장이던 이철규 씨 사망사건 수사에 관여하고 있었다. 한편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각영 씨도 당시 부장검사로써 사건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 심상명장관은 당

시 차장검사로서 수사지휘라인에 있었고, 김각영 총장 내정자도 당시 부장검사로서 재부검을 요구하던 많은 주장을 묵살하고 서둘러 실족익사로 판명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수사미진의 의혹이 제기되는 지금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할 책임 또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의혹을 종합할 때, 심상명 법무장관 임명과 김각영 검찰총장 내정은

부적절한 인사라 판단된다. 특히 지난 5년간의 검찰개혁 문제제기에 이어 최근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으로 회복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진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개혁적 리더십과 도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검찰총장은 현행법상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임기보장은 검찰의 독립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

서 참여연대는 도덕성과 업무장악력이 심히 우려되는 인물로 임시방편으로 뽑힐하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대선 결과에 따라 또다시 검찰의 총수가 바뀌는 상황은 검찰조직 전체를 놓고 볼 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편집시간 : 2002년11월11일 18:27

서울지검장과 3차장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문책성 전보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1. 대검찰청은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관련자 4명을 일괄구속하고, 김진환 서울지검장과 정현태 3차장 등 수사지휘부에 대한 문책은 '문책성 전보'와 '총장경고'로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는 당시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사퇴하여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졌고, 강력부장 또한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담당검사와 고문을 한 수사관들은 이미 구속된 것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인다. 엄중한 문책을 하겠다는 대검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 발 빼는 양상이고, 정작 사건발생 초기에는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떤 문책이든 견디며 받아들이겠다'던 서울지검장은 유구무언이다.

2. 이번 고문치사 사건은 검찰수사관들이 서울지검 청사 내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고문을 가하여 사망케 하였고, 검사마저도 고문을 묵인·방조하여 수사관들과

공범으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검찰의 존립을 근저에서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로 인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사퇴하였고 급기야 국정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고문과 같은 가혹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후임 장관에게 엄중문책을 지시하고 재발방지책을 주문하였다.

3. 그런데 정작 담당검사의 직속 상급자인 김진환 지검장과 정현태 3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장 사건과의 연관성이 많은 사람은 서울지검에 잔류하고 오히려 나머지 사람들만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웃지 못할 풍경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지검장 주변인물의 말이 사실인지 묻고 싶다. 오히려 거취문제와 관련하여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설령 보

고 받았다 하더라도 감독태만 등으로 정식 징계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는 대검찰청의 입장은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4. 만일 유사한 사건이 다른 국가기관에서 발생하여 담당 장관과 최고 실무자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경우에, 유독 업무처리 라인에 있던 직속상관만은 자리를 잠시 옮겨 전보처리로 끝낼 수 있었을지 하는 의문이 든다.

생각건대, 검찰은 타 국가기관과 달리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하는 것임은 당연한 것이지만, 책임소재가 분명한 이번 사건에서마저 책임을 지는 인적 범위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어버린다면 검찰내부에서마저도 검찰수뇌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보는 것이다.

편집시간 : 2002년11월14일 13:28

법무부의 고문수사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논평 위법수사 근절위한 실질적인 방안 내놔야 침고인 허위진술죄 등은 형평권의 과도한 행사

1. 법무부는 15일,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을 폐쇄·밤샘수사 금지·검사없이 검찰직원 단독으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고문수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에도 금지되고 있던 위법한 수사방법을 이제부터는 하지 않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하는 의문

이 강하게 든다. 더불어 수사력 강화를 위해서 참고인 허위진술죄와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2. 이번 법무부의 종합대책 발표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알맹이는 없는 빈 껍데기 대책들로 채워져 있어, 아직도 검찰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현행법상으로도 당연히 금지되었어야 할 밤샘조사와,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 및 검사가 직접하지 않는 검찰직원에 의한 조사를 이번 기회에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향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밤샘조사와 고문 그리고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직원 단독 조서작성은 당연히 위법한 수사방법으로써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하는 전근대적인 것으로서 이제는 사

라졌어야 할 수사관행에 다름 아니다. 또한 각 검찰청별로 차장검사나 지청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겠다는 것도 결국 내부적인 통제시스템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3. 한편, 수사력 강화를 위해 참고인 허위진술죄와 참고인 강제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상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로서 증인과 달리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법원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그를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참고인 진술의 허위성 여부도 가려내야 하는 거중책임을 지는 바 허위진술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인권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역시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두 가지 방안 모두 인권의 과도한 억제를 통해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4.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은 검찰의 존립근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 발표는 기존의 위법수사관행을 향후에는 금지한다는 극히 소극적인 의미 외에 실효성을 가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며, 형사소송법내에 변호인 참여권의 명문화 및 실질적인 보장과 이를 위한 검찰청사내부의 변호인 접견실 마련, 실적위주의 검찰분위기 개선을 위한 내부적인 인사제도개선안 마련 등이 되지 않는 한 신뢰 받는 검찰의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편집시간 : 2002년11월15일 19:05

법무부장관 망언 국민 앞에 사과하고 SOFA개정입장 밝혀야 국회는 미대통령 사과 및 SOFA 재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해야

1. 심상명 법무부 장관은 26일, 미군 장갑차 운전병 및 관제병 무죄평결과 관련하여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작년엔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법무장관의 이러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국가의 최고 법무책임자가 단지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협정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불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과 "미군이 주둔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응한 사례가 없었으며"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나라 법무장관의 말인지 우리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명백히 하면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헌법의 핵심중의 핵심인 '인간 존엄성'을 규정한 조문 내에 국가의 이러한 의무를 명시한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 존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두 여중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서 처참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성의없는 미군 검찰과 미군 배심원단에 의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무죄평결이 내려진 마당이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보호는커녕 재판절차에 대한 어떠한 현실적인 견제도 하지 못한 법무부가 '불평등한 제도를 개정하자'

는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작년엔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는 것은 국가기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3. 이렇듯 국민의 권리 수호의무는 외면하고 있는 대통령과 법무부가 불평등과 불의에 대해 항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위의 과격성을 이유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정부에 대해서 사과요구조차 떳떳하게 못하는 정부가 힘없는 시위학생들에 대해서만 공개적으로 엄벌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망언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이제라도 주권

국의 정부기구답게 불평등한 SOFA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한편,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판결을 두고 국민의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정치권에서 뒤늦게 SOFA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간 SOFA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드높았지만

정치권은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소극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점에서 그들 발언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은 선거공약 차원에서조차 SOFA 개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해 왔었다. 이제 와서 슬그머니 SOFA개정을 끼워 넣는 다 한들 비등한 여론을 의식한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개선과 SOFA

개정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대선후보와 각 정당이 미국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정부의 SOFA재개정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치권의 실천을 촉구한다.

편집시간 : 2002년11월27일 17:08

인권이 수사권보장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변호인 참여권 제한은 부당, 참고인 강제구인 및 처벌은 형법권 과잉행사,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1. 법무부는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연내에 확정하여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증거인멸, 공범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고 일부 공직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확대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 또한 수사권의 강화를 꾀한다는 취지의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와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 처벌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수사권의 남용을 초래할 여지가 많으며 형법권의 과잉행사로 보여 본래 의도했던 피의자 인권보장과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

2. 주지하다시피, 이번 법무부의 일련의 조치는 지난 10월에 발생했던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이 일차적인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특히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허위진술·공범도피·증거인멸 등의 경우에는 다시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만이 검찰과 법무부의 주된 관심사임을 보여준다.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동반하면서 수행되어서는 곤란하다.

서울지검 고문치사사건도 공범존재 및 증거인멸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으며, 법무부의 입장에 따르면 공범이 있거나 증거인멸이 문제가되면 전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변호인 참여권은 제한없이 보호되어야 하며 수사권의 확보는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검찰과 법무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는다.

3.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의 도입과 허위진술시 처벌하는 소위 사법방해죄의 신설도 역시 수사편의주의의 산물이다. 참고인조사는 본질적으로 임의수사여서 강제하거나 물리적인 힘의 행사는 금지되는 것이다. 참고인도 여건의 변화에 따라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피의자'이며 단지 참고인들이 허위진술을 많이 한다고 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다. 결국, 참고인이 법관면전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때 그를 위증죄로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법권행사일 것이다.

4. 절차적인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하여 많은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바람직한 개선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토론회에 참석하여 이러한 요구를 들으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내부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원과 변호사협회만을 상대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어찌에 맞지 않는 것이다. 먼저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차후에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변호인 참여권 보장과 재정신청범위의 확대는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학계와 시민단체가 줄곧 요구해왔던 해묵은 요구사항이어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또다시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안을 마련한다면 기대하는 피의자인권보호는 물론이고 검찰의 신뢰회복은 백년하청(百年河溝)이 될 것이다.

편집시간 : 2002년12월17일 11:30

인권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가

반인권적인 구속기간 연장은 철회되어야, 인권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거래하려면 안될 것

1. 법무부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22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중에 변호인 참여권을 일부 제한하는 문 제와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의 도입 및 소위 '사법방해죄' 신설 부분은 반대하는 입장을 이미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여기에 더불어 중대범죄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인권 역행적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2. 구속기간연장에 관한 개정안을 보면, 조직폭력이나 마약, 테러, 뇌물사건 등 일부의 중대범죄에 한해 현재 20일인 검찰 구속 기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6개월 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수사의 어려움을 들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이른바 중대범죄에 대한 해법은 수사인력의 확충과 과학화 및 사전준비의 철저성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것이지, 무작정 인신구속기간을 늘리려는 것은 지극히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형사 사법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인신구속을 최소화하는 방향인 바 기존의 구속기간도 지나치게 길어서 축소해야한다는 논의

가 있는 마당에 오히려 구속기간을 늘리자는 법무부와 검찰의 이번 개정안은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3.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의 도입과 허위진술 시 처벌하는 소위 '사법방해죄'의 신설도 역시 수사편의주의의 산물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단순히 비교되어서도 곤란하다. 참고인도 여건의 변화에 따라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피의자'이며 단지 참고인들이 허위진술을 많이 한다고 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검찰권위주의적 발상이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법무부와 검찰이 결국 참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빚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다만, 참고인이 법관면전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때 그를 위증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벌권행사일 것이다.

또한, 체포한 구속 후 48시간이내 및 증거인멸, 공범 및 도주우려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변호인을 수사의 훼방꾼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다.

사실상 검사에 비해 지위상 열세에 있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법률전문가로서 대등

한 지위를 갖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피해자나 참고인 등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순리이지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4.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과정을 보면, 몇 가지 개선된 내용을 양보하고 자신들의 수사권 보장을 위해서 인권침해소지가 대단히 많은 제도를 얻어내려 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인권은 국민을 상대로 거래를 하거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절차적인 문 제에서도 학계와 법조계의 먼저 의견을 들으려는 과정은 생각한 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채 한정된 논의의 틀을 제공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알뜰한 계산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편집시간 : 2002년12월23일 13:44

사면권도 법치주의 페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요건 및 절차를 재정비할 필요 절박, 사면심사위원회 도입해야

1. 정부는 30일, 사형수·경제인· 고위 공직자·공안사범·선거사범·외국인 등 모두 122명에 대하여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을 실시하였다. 특별사면 등이 법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고유한 권한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주

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면 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점과 정치적 고려에 의한 사면권 등의 남용여부이다. 사면권도 법이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하며 그 한계를 넘을 경우에는 당연히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사면권의 행사 등은 법치주의로 일관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일정한 정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여 오히려 법치주의에 이바지하는 면이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원칙이 없이 사용되거나 지나치게 자

주 사용된다면 법치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사면 등을 고려함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사안과, 반면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가 함께 끼워넣기식으로 일괄처리되고 있는 현실은 냉소를 자아내게 한다.

3. 특히, 사면대상자 중 정태수·김선홍·조양호·추호석 씨 등은 업무상횡령이나 분식회계의 혐의가 법원에 의해 확인되어 유죄로 인정된 인사들이며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및 잔형 면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과연 사회적 지탄의 정도가 낮은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한보그룹 회장이었던 정태수 씨와 전 기아 그룹회장이었던 김선홍 씨는 소위 IMF위기를 촉발하는 계기를 제공한 인물이고, 이들에 대한 사면 등이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채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아직도 IMF의 깊은 상처가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현실에서 그들에 대한 성급한 판단은 이르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사법부의 유권적인 판단을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간단히 뒤집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현저히 저해하고 침해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탄여부를 법무부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또한, 전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사면·복권도 국민들이 심한 무거움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그들이 공직자로서 중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였다는 추론이 당연히 가능한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새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터에, 이들이 사면됨으

로써 앞으로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른바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누가 막을 수 있는가.

4.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한 바 있다. 사면권 등의 행사에 적절한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찾아보자는 노력을 하자는 의도였다. 우리의 경우 이른바 '권력형비리'에 대해 유독 사면 등이 남용되었다는 경험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이러한 절차 및 제도적 장치를 계속 미룬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됨은 물론 사면권 등을 행사하는 권력의 정당성에 심각한 손상이 올 것이다.

편집시간 : 2002년12월31일 14:24

검찰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는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겸허해야 할 것, 특별수사검찰청은 대안이 될 수 없어

법무부는 7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특검제 상설화 등 기존 검찰조직과 분리된 별개의 사정기구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하고, 별도의 사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보다는 법무·검찰 조직 내에 특별수사검찰청을 두는 방안을 인수위에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의 입장은 아직도 검찰이 자기개혁에 소극적이며, 오로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별수사검찰청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검찰개혁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검찰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에 열려있어야 한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더 이상 익명성을 이용하여 개혁에 반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여전히 검찰조직 내에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를 되

세겨 볼 필요가 있다. 멀리 거슬러 갈 것도 없이,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각종 비리에 검찰고위간부가 연루되었으며 몇 시간 전까지 상관으로 모셨던 상급자를 하급자가 수사를 하는 웃지 못할 장면들을 국민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 뿐인가. 정치권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사건과 대형비리사건들에 대해 속 시원히 해결한 성과물이 있었는가. 검사 등 내부의 비리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검찰부는 재식구들에게 제대로 된 감찰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제 검찰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인사의 독립없는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검찰이 진정으로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한다면, 법무부 스스로가 밝히는 것처럼 인사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법

무부 관계자들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재야인사 등이 참여하는 경우 적절한 인사배치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검찰은 인사의 독립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외부인사의 참여는 거부하며, 기소위원화를 통한 기소권의 합리적인 역할재조정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어느 것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배타적이고 완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검찰개혁을 실행에 옮겨야

법무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노 당선자의 대신 공약 사항이다. 스스로 개혁에 나설 수 없는 검찰의 내적·외적 조건상 피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

분하고 냉정하게 검찰개혁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해 그동안 제기된 제도개선방안은 이미 국민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다. 철저히 관찰시켜야 할 것

이다. 검찰이 명심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려면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변화와 개혁을 원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것 중 하나는 검찰

개혁이다.

편집시간 : 2003년01월08일 13:02

독립된 별도의 사정기구 신설만이 검찰 중립성 시비 불식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한 검찰과 부방위의 주장에 대하여

1. 노무현 당선자가 부패척결 및 사정기구 개혁의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해 관련기관들이 입장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권 분산에 따른 문제점 등을 이유로 조사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부패방지위원회는 조사처를 산하기구로 두자는 주장이다. 법무부의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 없는 가득권 수호 논리에 불과하며 부방위 주장 역시 조사처 신설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방안이다. 독립적인 사정기구 신설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얼룩진 검찰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유력한 견제 수단이며 아울러 사정 및 의혹사건 규명 과정의 정치적 시비를 원천적으로 봉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여부는 차기정권의 성패를 판단할 가능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집권 전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한다.

2.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인한 우리사회의 폐해는 이젠 일일이 거론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검찰의 '내부개혁', '자율개혁' 주장 역시 국민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응해 검찰이 마련한 '특별수사검찰청'은 이미 폐기처분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이 이용호 게이트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재작년 말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자체개혁방안이 바로 '특별수사검찰청'이었다.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벗기 위해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키겠

다는 특별수사검찰청의 본질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조직이자 수사역시 현지검사들이 맡는 대검 중수부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어떠한 국가기관 심지어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적인 사정기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3. 이처럼 검찰의 자율적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기정부는 아직까지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은 DJ정부하의 각종 의혹사건, 안풍·세풍·병풍 등 야당관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책임을 넘겨받았다. 그리고 노 당선자 측근 연루설이 제기되었던 나라중금 사건 등의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비리, 정치부패 등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사정을 벌여나가기야 한다. 이 모든 사건들의 진실규명과 수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시비도 용납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정기구의 독립성 보장은 제일의 원칙이다. 이는 김대중 정권 초기부터 검찰이 총체적으로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권력형비리, 정치적 사건에서는 야당의 정치공세와 방탄국회 등으로 발목을 잡힘으로써 수사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아울러 일반사건에 있어서도 검찰 수사의 형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는 결과를 초래해 사정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렸던 경험으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이다.

4.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검찰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정기구로서 조사처에 소속된 특별검사로 하여금 권력형비리 및 고위직 비리를 수사토록 하고 아울러 기소까지

담당케 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기능을 이원화해 상호견제가 가능한 선의의 경쟁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검찰 역시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같은 '검찰권 이원화'가 법무부의 주장처럼 사정기구의 난맥을 초래하기보다는 사정기구를 오히려 세울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그리고 검찰권 약화에 대한 우려 또한 현재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지나친 권한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더욱 크다는 점에서 오히려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법무부의 주장은 수사 및 기소권을 현재의 검찰조직만이 행사해야 한다는 가득권 수호 논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5. 한편 부패방지위원회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부방위의 산하기구로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조사권한만을 갖는 조직으로 당초 기소권을 가진 독립기구 신설이라는 요구와는 무관한 것이다. 설령 수사와 기소권을 갖는 기구라 할지라도 부방위 산하에 두는 것은 현재의 부방위 구조로는 가능할지 의문이다. 현재의 여야가 관여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건에서 독립성보다는 정치적 결정을 내릴 위험이 크며,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 및 특별검사는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고 독립적인 절차를 통해 임명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장이 부방위원장 혹은 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모순이 발생한다.

6.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의 문제의식은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상설화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노 당선자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를 동시에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혼란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특검제의 모든 장점을 수용하고 있다.

오히려 특별검사제는 비리사건이 정치적 쟁점이 된 후에 그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므로 비리정보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를 갖춰 부패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비리수사와에도 정치적 사건,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그동안 특검제를 도입해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국회가 의결을 거쳐 고공처가 이를 수사하도록 해 특검제의 취지를 수용하면 될 것이다.

7. 법무부와 검찰은 여전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뿐만 아니라 특검제도 반대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

는 배타적이고 완고한 검찰의 태도는 역설적으로 왜 타율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한가를 웅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그 어떤 항변도 검찰 스스로 초래한 국민적 불신 앞에서는 공색한 자기변명으로 보일 뿐이다. 최근 노 당선자와 인수위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검찰개혁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국민들은 과연 차기정권이 집권 전후시기에 의지가 아닌 행동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편집시간 : 2003년1월10일 13:58